

17 감사부 보고

제103회기 감사부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부 장 최병철
서 기 조승호

1. 조직

- 1) 임 원 : 부장 최병철, 서기 조승호, 회계 동현명, 총무 이은철
- 2) 부 원 : 박광배 조평제 고석득 황남길 문금식 박춘근 남태섭 태준호 최준환 김정호
양성수 박준유 강만제 최인수

2. 회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 일 시 : 2018. 9. 10(월) 21:30
- ☞ 장 소 : 반야월교회당
- ☞ 결의사항
 - ① 감사부 임원 조직은 부장에게 일임하여 조직하기로 하다.

(2) 제2차 전체회의

- ☞ 일 시 : 2018. 10. 23(화)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부장이 임원조직을 발표하니 서기 조승호 목사, 회계 동현명 장로, 총무 이은철 목사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제103회기 정기감사 일정은 102회기에 준하여 3월, 8월에 실시하기로 하고, 3월 감사는 3월 18일(월) - 22일(금) 기간에 감사하기로 하다.
 - ③ 상시감사와 특별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하기로 하고, 감사부원은 부원의 자질과 특성을 살피 부장이 지명하여 감사에 참여하기로 하다.
 - ④ 제103회기 감사부 워크숍 진행의 건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하고, 임원들에게 맡겨 준비하기로 하다.
일시 : 2018년 11월 5일(월) 오후 5시 ~ 7일(수)
장소 : 계룡스파텔
대상 : 감사부원 전원(부부동반)

(3) 제3차 전체회의

- ☞ 일 시 : 2019. 3. 12(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제36회기, 제37회기 배임, 횡령, 직무유기 행위자들에 대하여 사법에 고발하자는 제10차 감사부 임원회의(2019년 2월 14일(목)) 결의대로 사법에 고발하기로하고, 고발할 대상은 부장 최병철 장로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단, 감사부원 양성수 장로(전국남전도회연합회 증경회장)의 기회를 달라는 요청으로 회개하고 전액 환수 조치하고, 당회, 노회, 총회, 연합회 공직을 내려놓고 자숙할 것을 2019년 3월 23일(토)까지 권면하겠다고 하여 맡기기로 하다. 거부할 시 2019년 3월 25일(월)에 감사부 전체 이름으로 고발하기로 하다.
- ② 제102회기 통일준비위원회는 규칙위반, 배임, 횡령, 해 총회 행위를 하였는바 행위자들에게 회개하고 전액 환수조치토록하고, 노회, 총회, 연합회의 모든 공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사법에 고발하자는 안건에 대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단, 사법에 고발할 대상은 부장 최병철 장로에게 맡기고 2019년3월 23일(토)까지 기한을 주며 거부하면 2019년 3월 25일(월) 감사부 전체 이름으로 고발하기로 하다.
- ③ 성석교회와 관련된 허위사실 서류 발급의 건은 해당 관련자들을 조치하도록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는 안건에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④ 정창수 목사 부서기 후보 시 금품수수 의혹 관련 건은 철저히 조사한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하기로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4) 제4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8. 5. 20(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조승호 목사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채택하기로 가결하다.
- ② 특별감사 보고의 건
 - 가. 제36회, 제37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건
 - a. 제36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특별감사 관련자는 완강하게 본인의 잘못을 부인함으로써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중에 있음을 감사부장 최병철 장로가 보고하다.(소송비용 : 5,500,000원)
 - b. 제37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특별감사 관련하여 양성수 장로가 보고하니 감사 관련자와 4차례의 면담 후 회장, 총무와 조율하여 2년동안 노회, 총회의 모든 공직을 내려 놓고 자숙하기로 하며 20,000,000원을 환수됨을 보고하다.
 - 나. 제102회기 통일준비위원회 특별감사 건을 총무 이은철 목사가 보고하니 기도회 시 헌금을 회계에게 입금하지 않고 협찬금, 찬조금, 광고금 등 역시 회계에게 입금하지 않았다. 관련자는 제103회기 1년동안 자숙하고 총회에 금전적 손해를 준 부분은 금액은 환수하도록 조치 하다. 김용대 목사, 김재호 목사, 남서호 목사, 이기봉 목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총무 이은철 목사, 김정호 목사에게 맡기기로하고, 김영태 장로에 대한 조사는 회계 동현명 장로에게 맡겨 2019년 5월 29일까지 조사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한 '질의의 건'(총선 제103-4호)건은 총회선거규정대로 시행함이 마땅함을 가결하다.
- ④ '성석교회 관련 건'(본부 제103-324호) 성석교회 관련 불법서류 발급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서 감사부로 수입해준 사항이므로 감사부에서 조사한대로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김정호 목사 기도로 정오 12시에 정회하다.

총무 이은철 목사 기도로 오후 1시에 속회하다.

- ⑤ 제103회 총회 감사(중간) 총명 및 모든 보고서 작성, 지방신학교 관련 감사, 특별감사 등에 대하여 부장 최병철 장로, 서기 조승호 목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 ⑥ 정창수 부서기 후보 금품수수 의혹 관련 건에 대해서는 모종훈 목사에게 언제 봉투를 선관위의 누구에게 전달했으며 언제 누구에게 다시 봉투를 돌려받았는지 경위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2019년 5월 29일(수) 까지 제출하도록하기로 하다.
- ⑦ 서만중 목사가 질의한 전남노회 서기 모종훈 목사에 대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금품수수 질의 건은 개인이 보냈으므로 감사부에서 다룰 수 없으므로 총회임원회로 이첩시켜 반려하기로 하다.

(5) 제5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9. 8. 19(월)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조승호 목사가 회원점명하니 17명 참석하여 성수가 되므로 부장 최병철 장로가 개회됨을 선언하다.
오후 12시 55분 남태섭 목사가 정회 및 식사기도를 하다.
오후 1시 총무 이은철 목사 기도로 속회하다.
- ② 충신대학교에서 총회충신대학교 감사예정 사항에 대한 학교법인이사회 의견 전달 공문에 대해 감사요구서를 정식으로 발송하기로 동의 재청 후 가결하다. 서기 조승호 목사, 총무 이은철 목사, 남태섭 목사, 태준호 장로, 박춘근 목사에게 맡겨 발송하다.
오후 6시 고석득 목사가 정회 및 식사기도를 하다.
오후 7시 20분에 속회하다.

(6) 제5차 전체회의(속회 1)

☞ 일 시 : 2019. 8. 20(화)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오전 10시 남태섭 목사 기도로 속회하다.
- ① 제103회 총회 정기 감사를 진행하다.
오후 12시 박준유 목사가 정회 및 식사기도를 하다.
오후 1시 김정호 목사 기도로 속회하다.

(7) 제5차 전체회의(속회 2)

☞ 일 시 : 2019. 8. 21(수)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오전 10시 남태섭 목사 기도로 속회하다.
- ① 제103회 총회 정기 감사를 진행하다.
오후 12시 최준환 목사가 정회 및 식사기도를 하다.
오후 1시 양성수 장로 기도로 속회하다.



진정 및 투서 조사처리의 건에 관련이 있는 자들은 확인시 까지 총대 천서 제한을 보류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② 이호현 목사(함남노회) : 서광주노회와 전남제일노회 총회합병위원장 금품수수조사처리 및 서광주노회 관련 103회 총회결의(합병위원회 8차결의) 불이행 조사처리의 건
- ③ 남서호 목사(제102회 통일준비위원회 서기), 김영태 장로(제102회 통일준비위원회 회계)는 노회, 당회로 하여금 치리하여 영구제명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 ④ 강재식 목사(평양노회) : 함경노회 소속 성석교회 대표자증명서와 소속증명서 불법서류 발급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
- ⑤ 군선교회 사무총장 최수용 장로, 이희중 장로는 적법한 절차없이 재정을 사용하여 신평교회 입찰 및 건축 과정의 불법적 사항이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정지, 총대제한, 중앙지점에 고발키로 하다.
- ⑥ 강태구 목사(함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유도한 행위에 대해 재판국원을 회유한 행위를 하다. 해총회 행위가 분명하다.
- ⑦ 제102회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 금품수수의 건은 부장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⑧ 전주남 목사(한성노회)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비 횡령 건을 조사하다.
위의 건을 축조하여 하나씩 가결하고 2019년 8월 22일(목)에 감사인을 직원을 통해 통보하기로 하다.
오후 5시 25분 김정호 목사 기도로 속회하다.
- ⑨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 위원회 관련하여 전 재단이사는 천서를 잠정보류하고 차후에 문제를 다루어 가도록 하다.
저녁식사 후 오후 6시 속회하다.
- ⑩ 2019년 8월 22일(목) 오전 10시에 부장 최병철 장로, 서기 조승호 목사, 총무 이은철 목사, 김정호 목사, 최인수 목사, 태준호 장로, 남태섭 목사, 양성수 장로, 강만제 장로가 모여 회의를 이어가기로 하다.

(8) 제5차 전체회의(속회 3)

☞ 일 시 : 2019. 8. 22(목)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오전 10시 태준호 장로 기도로 속회하다.

- ① 제103회 총회 정기 감사를 진행하다.
오후 12시 양성수 장로가 정회 및 식사 기도를 하다.
오후 1시 김정호 목사 기도로 속회하다.

(9) 제5차 전체회의(속회 4)

☞ 일 시 : 2019. 8. 27(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오전 10시 최인수 목사 기도로 속회하다.

- ① 제103회 총회 정기 감사 미진부서 정리 및 감사부 접수 건을 다루다.
오후 12시 최인수 목사가 정회 및 식사 기도를 하다.

오후 1시 부장 최병철 장로 기도로 속회하다.

2)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0. 5(금)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감사부 조직 건은 팀장과 팀원 배정은 부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 ② 제103회기 감사부 워크샵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하고, 감사선정은 부장 최병철 장로와 총무 이은철 목사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 가. 일시 : 11월 5일(월) ~ 7일(수) 2박3일
 - 나. 장소 : 계룡스파텔
 - 다. 대상 : 감사부원(부부동반)
- ③ 제103회기 감사연간 계획 건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하다.
 - 가. 정기감사 : 3월(중간), 8월(정기)
 - 나. 특별감사
 - a. 통일준비위원회(제102회기)
 - b. 선거관리위원회(제102회기)
 - c. 전국남전도회(제36회기)
 - d. 목회대학원(제102회기)
 - e. 제103회 총회 결의에 대한 조사처리건
 - ㉠ 중부노회 재심청원의 건
 - ㉡ 성석교회 불법서류 발급의 건
 - ㉢ 동대전제일노회가 청원한 특별재판국 구성의 건
 - f. 일시 : 10월 10일(수) ~ 12(금)
 - g. 통일준비위원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회계, 총무 5인 참석공문 발송할 것)
 - ④ 미비한 사항은 부장에게 맡겨 후속 처리하기로 하다.

(2) 제2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0. 10(수)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조승호 목사가 회원점명을 하니 전원 참석하여 성수가 되므로 부장 최병철 장로가 개회됨을 선언하다.
- ②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 및 내용 추가하여 받기로 결의하다.
- ③ 안건심의 내용을 확인하다.
 - 가. 잔여감사 건
 - a. 목회대학원(제102회기)
 - 나. 특별감사 건
 - a. 통일준비위원회(제102회기)
 - 다. 제103회 총회 결의 조사처리 건



- a. 중부노회 재심청원의 건
 - b. 성석교회 불법서류 발급의 건
 - c. 동대전제일노회가 청원한 특별재판국 구성의 건
- 라. 기타(정창수 목사 금품 살포의 건)

④ 감사부 전체회의를 2018년 10월 23일(화) 오전 11시에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⑤ 잔여감사 : 목회대학원(제102회기)

박춘근 목사는 총회 감사부원이면서, 김신규 목사가 불법적으로 조직한 운영이사회의 자칭 이사장으로 활동하여 체척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제103회 총회에서 발언하여 목회대학원 운영특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운영 및 조사처리위원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선정하기로 결의한 건은 무효임 확인하다.

오후 12시 19분 총무 이은철 목사의 기도로 정회하다.

오후 2시 총무 이은철 목사의 기도로 속회하다.

⑥ 특별감사 : 통일준비위원회(제102회기)

제102회기 통일준비위원회 서기 남서호 목사 1인 출석하여 특별감사를 받다. 서면서류가 갖추어지지 않고 출석하였으나 충분히 논의하였고 추후 나머지 4인(위원장 김용대 목사, 부위원장 김재호 목사, 회계 김영태 장로, 총무 이기봉 목사) 임원들은 반드시 출석하여 특별감사를 받기로 하다.

⑦ 제2차 감사부 임원회의(속회 1)(2018년 10월 11일(목) 오전 11시)에 아래의 사람들을 출석하게하여 특별감사 받게 하다.

가. 제102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 - 김정설 목사, 권순직 목사, 김영달 목사, 김성태 장로, 홍순율 장로

나. 제102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임원 - 이은철 목사, 서현수 목사

다. 전남노회 노회장 이정철 목사, 서기 모종훈 목사

라. 총회 임원 부서기 정창수 목사, 증경부총회장 신신우 장로

(3) 제2차 임원회(속회 1)

☞ 일 시 : 2018. 10. 11(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2018년 10월 11일(목) 오전 11시 서기 조승호 목사 기도로 속회하다.

② 전회의록(2018년 10월 10일(수))을 낭독하니 자구수정 및 내용 추가하여 받기로 결의하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제102회기) 임원 (위원장 이은철 목사, 서기 서현수 목사), 심의분과(김정설 목사, 김영달 목사, 홍순율 장로), 전남노회(노회장 이정철 목사, 서기 모종훈 목사), 총회 임원 (부서기 정창수 목사)를 특별감사 하다.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에 대해서만 서류심사를 해야하고 해당노회의 장로총대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 천서위원회의 소관 사항임을 확인했다.

나. 전남노회가 미비된 보고서를 접수했고 총회 개회날에야 총회에 접수한 것은 문제가 있으나 불법적이지는 않았다.

다. 제102회 감사부의 특별감사 보고서 문건을 읽어주고 모두 적법했음을 확인했다.

라. 금품살포건은 추후 감사하기로 하다.(피감자가 불출석함)

오후 12시 50분 서기 조승호 목사 기도로 정회하다.

오후 1시 50분 총무 이은철 목사 기도로 속회하다.

- ④ 이어서 부서기 정창수 목사가 출석하여 심의하다.
- 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를 불렀을 때 이의를 묻자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다
나. 자격유무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다.
다. 금품살포를 했다는 주장들에 대해 6하원칙으로 제시하도록 하다.
- 질문과 대답(질문 / 부장, 대답 / 부서기 정창수 목사)
- a. 신신우장로를 선거 참모로 임명한 적이 있는가? / 그는 총대도 아니며 그런적 없다.
b.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있는가? / 그런적 없다.
c. 노회에서 당회결의를 거쳐 부서기 후보로 추대를 결의하였는가? / 예
d. 혹시 장로 총대가 총대 분담금을 본인이 내는가? / 예
e. 금품살포 사실이 없으나 확증이 나오면 물러날 수 있겠는가? / 예
- ⑤ 위와 같이 제102회기 잔여감사를 하였고, 제103회기 감사와 조직은 2018년 10월 23일(화) 감사부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 및 시행키로 하다.

(4) 제2차 임원회(속회 2)

☞ 일 시 : 2018. 10. 12(금)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2018년 10월 12일(금) 오후 2시 서기 조승호 목사 기도로 속회하다.
- ② 서기 조승호 목사가 회원점명 하니 전원 참석하다.
- ③ 전회의록(2018년 10월 11일(목))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④ 통일준비위원회(제102회기) 특별감사를 위해 제102회기 총무 이기봉 목사가 출석하여 질문하다.
- 질문과 대답
(질문 / 부장 최병철 장로, 서기 조승호 목사, 회계 동현명 장로, 총무 이은철 목사, 대답 / 총무 이기봉 목사)
- 가. 통일비전트립 7박 9일 일정 동안 몇 개의 나라를 갔나? /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입니다.
나. 목적이 여행이였는가? 통일비전트립이였는가? / 비전하에 여행도 겸했습니다.
다. 후원금(현금)을 계획, 진행하고 결산한 것을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시 논의 하거나 결의 한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가? / 없었습니다.
라. 총무가 직접 돈을 받거나 지출하거나 관여했는가? / 없었습니다.
- ⑤ 총무 이기봉 목사에게 경위서를 작성하여 2018년 10월 18일(목)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다.

(5) 제3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0. 23(화)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2회 통일준비위원회 특별감사를 위해 제102회기 위원장 김용대 목사, 부위원장 김재호 목사, 서기 남서호 목사, 회계 김영태 장로가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하다.
- 질문과 대답



- 가.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록은 서기에 의해 철저히 작성 되지 않았다. 위원장 김용대 목사와 총무 이기봉 목사 2인이 기록하기로 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 정관을 구체적으로 본적이 있는가? / 없다.(김재호, 김영태)
- 나.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적이 있는가? / 없다.(남서호)
- 다. 입출금은 총회 통장으로 해야하고, 지출 등은 회의를 거쳐 의결해야 하는데 알았으며 시행하였는가? / 나중에 알았다.(김영태)
- 라. 재정결과 보고를 받은적이 있는가? / 없다.(김재호), 회의에서 서류로 보고는 없었으나 구두로 주고받은 것 같다, 정리정돈이 미숙하였으나 오용은 안했다.(김용대)
- 마. 제102회 통일준비위원회 임원에게 별을 주려고 하는게 아니다, 책임을 질분은 책임 지고 회의록, 장부 등을 기록하여 다음 제103회 통일준비위원회에 넘겨줄 의향이 있는냐? / 예(일동)
- ② 제102회 통일준비위원회 사건에 관계된 사람은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이번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선별하여 특별위원회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총회장에게 품의하기로 하다.

(6) 제4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0. 29(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조승호 목사가 회원 점명하니 성수가 되므로 부장 최병철 장로가 개회됨을 선언하다.
- ② 서기 조승호 목사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③ 부원 김정호 목사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다.
- ④ 제103회 총회 감사부 워크숍의 순서, 선물, 강사 선정 등을 논의하고 잔무는 부장에게 일임하다.

(7) 제5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1. 13(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조승호 목사가 회원 점명하니 성수가 되므로 부장 최병철 장로가 개회됨을 선언하다.

②

- 가. 제102회 통일준비위원회 특별감사 결과 보고 건
- 나. 제103회 총회 부서기 금품살포에 대한 특별감사 건
- 다. 전국남전도회연합회(제36회기, 제37회기) 특별감사 요청 건
- 라. 성석교회 불법서류 발급 건
- 마. 전서노회 허위문서 발급 특감 건
- 바. 서인천노회 특별감사 건에 대한 서류를 검토 및 예비 심사
- 사. 기타안건

박춘근 목사 기도로 오후 12시20분에 정회하다.

조승호 목사 기도로 오후 1시25분에 속회하다.

- ③ 기타안건 : 울릉양문교회 불법 매각 건

참고인으로 개척한 원용국 목사(중부산노회, 부산양문교회) 권사 임순례 씨 현재 부산시 기장

군 기장을 거주.

가. 진술 : 경동노회 소속 엄수봉 목사가 교회 문을 잠그고 민박집 용도로 13억에 매각하려 했다. 경동노회에서 원용국 목사 등을 고소하다.

교회는 결코 매각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로 지켜야 하고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지도하였으며 원용국 목사와 장재덕 목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다.

④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특별감사 건은 36회(제101회기) - 38회(제103회기) 재정입출금 내역서, 통장 및 모든 지출결의 품의서를 제출받기로 결의하다.

⑤ 제103회 총회 부서기 정창수 목사의 금품살포에 대한 특별감사의 건은 신신우 장로, 김성태 장로, 김영달 목사, 모종훈 목사 참석하여 사실 확인을 하다.

가. 감사부장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a. 김영달 : 간식비를 줬다기에 봉투 하나씩 받아 올라갔다. 서류봉투인 줄 알고 김정설 목사 차안(김정설, 김영달, 홍순율)으로 들어가서 봄.

b. 모종훈 : 신신우 장로에게 사각 봉투를 받아 서류인줄 알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김정설 목사에게 전달함.

c. 김성태 : 받지 않고 돌려보냄

d. 이은철 : 이 사건전체에 대해 보고받은 일 없다.

나. 감사부 서기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a. 감사부 서기 / 모종훈 : 처음전달하고 나중에 되돌려 받을 때까지 끝까지 서류봉투인줄 알았는가? / 예

b. 감사부 서기 / 일 동 : 여름더위에 총회 지하주차장 차 안으로 3명이 서류를 받으러 들어갔는가? 그러면 돈봉투인지를 확인 하고 왜? 주머니에 넣고 4층 회의실까지 들어갔는가? 이것이 당일 심의분과 회의의 민감한 후보자의 심사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 증인 일동 얼굴을 붉히며 즉답을 하지 못하였다.

다. 지난번 감사에서는 간식비 50만원을 받았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각자 50만원씩 네명이 받았으며, 단돈 10원도 받은 일 없다는 진술은 위증이었음을 밝히다.

동현명 장로 기도로 오후 4시 30분에 정회하다.

박춘근 목사 기도로 오후 4시 40분에 속회하다.

⑥ 서인천노회 새소망교회 부목사 성추문 건에 대하여 총회장의 지시로 익일(13일) 오전11시에 서인천노회 노회장 최석우 목사, 부노회장 이병현 목사, 서기 고재성 목사, 정치부 부장, 정치부 서기 포함 5인 출석케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청원서의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제2차 증빙서류를 갖춰 2018년 11월 15일(목) 오전 11시에 다시 출석해 확인키로 하다.

⑦ 새인천노회 임시노회 시 조승호 목사, 이은철 목사, 김정호 목사 3인을 참관인으로 보내기로 하다.

⑧ 2018년 11월 5일(화) ~ 7일(수)에 진행된 감사부 워크숍의 결산을 보고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8) 제5차 임원회(속회 1)

☞ 일 시 : 2018. 11. 14(수)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부장 최병철 장로의 교육 후 감사 진행에 대해 의논하다.



- ② 전국남전도회연합회 간사를 출석케 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다.
남전도회연합회는 제36회기~제38회기 자료제출과 감사에 협조하지 않을시 1)사법에 고발하고 법무비용은 총회가 부담하고 2)감사를 마칠할 때까지 전국남전도회연합회의 총회재정은 잠정중단, 남전도회연합회 각종 행사 및 헌신예배는 차후 지시가 있을때까지 잠시 중단한다.
- ③ 서인천노회 새소망교회 부목사 불법제명처리에 관련자들은 2018년 11월 15일(목) 오전 10시에 재소환기로 하다.
- ④ 2018년 11월 15일(목) 오전 9시50분에 속회하기로 하다.

(9) 제5차 임원회(속회 2)

☞ 일 시 : 2018. 11. 15(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2018년 11월 6일(화) 총회장으로부터 성추문 사건에 대해 확인 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인천노회 노회장 최석우 목사, 부노회장 이병헌 목사, 서기 고재성 목사, 정치부장 허종현 목사를 참석시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하다.
가. 새소망교회 당회장 김영남 목사가 제출한 청원서에 부목사 김다현이 사직하였으므로 제명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는데, 부목사의 이름을 노회명부에 없는 '김다현'이라 잘못 작성하였고, 당회록 사본이나 본인의 사임서도 없는 바 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권면하다.
나. 서인천노회는 김다정 목사의 제명을 임원과 정치부연석회의로 결의한 바 이는 불법이므로 임시노회를 열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을 지도하다.
다. 서인천노회에서 2018년 11월 26일(월)에 임시노회를 열 것을 보고 받았으며, 감사부에서 참관인(서기 조승호 목사, 총무 이은철 목사, 김정호 목사)을 파송하기로 하다.
- ② 전서노회 허위문서 발급에 대한 특별감사의 건은 공문서 발급 이해 당사자 이승만 장로,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 담당자 박강석 목사, 제102회기 총회 서기 권순웅 목사를 2018년 11월 20일(화) 오전 11시에 출석시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하기로 하다.
- ③ 성석교회 관련 불법서류 발급 건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총회 서류 발급 담당직원, 행정책임자, 서류발급을 요청한 강재식 목사, 임창일 목사를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에 출석시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하기로 하다.
- ④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특별감사 요청 건은 전국남전도회연합회의 회계장부를 검토 후 차기 회의 시 자료제출 및 결과보고를 받고 진행하기로 하다.
- ⑤ 제103회 총회 부서기 정창수 목사의 금품 살포에 대한 특별감사의 건은 관련자들이 출석하여 사실확인을 일부 청취를 하였고 차기 회의에서 조치하기로 하다.
- ⑥ 제102회기 통일준비위원회 특별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차기 회의에서 책임자를 시벌하기로 하다.
- ⑦ 기타 안건 독도교회(울릉양문교회) 건은 경동노회 노회장 류광하 목사, 서기 엄성호 목사, 장재덕 목사, 엄수봉 목사, 중부산노회 원용국 목사를 2018년 11월 21일(수) 오후 1시에 출석시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하기로 하다.
- ⑧ 차기회의는 2018년 11월 20일(화) 오전 11시부터 22일(목)까지 하기로 하다.

(10) 제6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1. 20(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조승호 목사가 회원 점명하니 성수가 되므로 부장 최병철 장로가 개회됨을 선언하다.
- ② 서기 조승호 목사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1.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도록 하다.
 - 가. 2018년 11월 6일(화) 총회장으로부터 성추문 사건에 대해 확인 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인천노회 노회장 최석우 목사, 부노회장 이병헌 목사, 서기 고재성 목사, 정치부장 허종현 목사를 참석시켜 질의 및 의견 청취를 하다.
 - a. 새소망교회 당회장 김영남 목사가 제출한 청원서에 부목사 김다현이 사직하였으므로 제명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는데, 부목사의 이름을 노회명부에 없는 '김다현'이라 잘못 작성하였고, 당회록 사본이나 본인의 사임서도 없는 바 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권면하다.
 - b. 서인천노회는 김다정 목사의 제명을 임원과 정치부연석회의로 결의한 바 이는 불법이므로 임시노회를 열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을 지도하다.
 - c. 서인천노회에서 2018년 11월 26일(월)에 임시노회를 열 것을 보고 받았으며, 감사부에서 참관인(서기 조승호 목사, 총무 이은철 목사, 김정호 목사)을 파송하기로 하다.
- ③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특별감사 요청 건은 김성애 간사를 출석시켜 증언 청취를 하다. (질문 부장 최병철 장로 / 답변 김성애 간사)
 - 가. 이 회계원장 장부를 보셨어요? / 예
 - 나. 이 회계원장 장부가 맞게 수록됐다고 보시나요? / 가끔 봤습니다.
 - 다. 장부에서 어느때부터가 누계가 없어졌는데 보셨나요? / 아노
 - 라. 잔액이 일천만원, 인출이 일천칠백만원 이게 가능해요? / 불가능합니다.
 - 마. 이 장부 한 번도 안보셨나요? / 저는 슬쩍만 보았고 항상 이장로님이 가져 가셨어요.
 - 마. 500만원 선교지 교회설립에 보내고 영수증은 5천만원 또는 3천만원 짜리가 붙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 잘못된 것입니다.
 - 사. 회계 장부는 누가 작성 하나요? 회계, 간사님 누가 합니까? / 회계가 합니다.
 - 아. 회의록 통장 도장이 없습니까? / 회기가 지나면 다 없습니다.
- ④ 전서노회 허위문서 발급에 대한 특별감사의 건은 증인 이승만 장로가 출석하여 증언하다.

(11) 제6차 임원회(속회 1)

㉮ 일 시 : 2018. 11. 21(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성석교회 불법 서류 발급의 건에 대하여 총회 기획행정국 조미에 차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다.

총무 이은철 목사 기도 후 정회하다. 오후 12시
서기 조승호 목사 기도 후 속회하다. 오후 1시
- ② 독도교회(울릉양문교회)불법 매각 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아래와 같이 결론 하고 보고하기로 하다.

1팀장 : 장재덕 목사 / 2팀장 이춘복 목사 / 3팀장 이은철 목사 / 4팀장 태준호 장로

 - 가. 경동노회 활요에 의거 노회장과 장재덕 목사에게 내용을 듣고, 폐교회 결의와 재산을 한사랑선교회에 귀속키로 했다는 결의는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다.
 - 나. 엄수봉 목사는 자신의 고백에 의해 2018년 3월 중순에 교회를 떠났음을 확인하다.(정치 제 17장 제5조)



- 다. 교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유지재단에 가입시키기로 찬동하니 경동노회 노회장 류광하 목사, 서기 엄성호 목사, 시찰장 이재덕 목사, 장재덕 목사는 찬성하고, 엄수봉 목사는 반대하다.
- 라. 임시노회를 절차에 따라 개최하도록 하고, 엄수봉 목사는 사임 하고, 좋은 목사님을 파송하여 교회가 부흥되도록 인도할 것을 권고하다.

※ 진술내용

- a. 경동노회 노회장 류광하 목사 : 잘못을 인정한다.
- b. 경동노회 서기 엄성호 목사 : 모든 절차의 잘못을 인정한다.
- c. 시찰장 이재덕 목사 : 노회장, 임시당회장에게 보고 했으나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다.
- d. 장재덕 목사 : 경동노회로만 두면 유지재단에 가입시키겠다.
- e. 원용국 목사 : 타노회 행위는 사과하나 교회는 살려야 한다.
- f. 엄수봉 목사 : 원래대로 복귀하고 싶다.
- g. 엄순례 권사 : 엄수봉 목사는 전도하지도 않았고 오는 사람은 쫓아냈다.

(12) 제6차 임원회(속회 2)

☞ 일 시 : 2018. 11. 22(목)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2회 통일준비위원회 건은 실무임원이 다시 모여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하다.
- ②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특별감사 건은 각 회기마다 통장, 도장, 회의록을 폐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기에 총회장 지시에 의해 은행 입출금(제36회, 제37회) 내역을 전국남전도회연합회에 요청하고 계속 감사하기로 하다.
- ③ 제103회 총회 부서기 정창수 목사의 금품살포 특별감사건은 홍순율 장로의 진술이 맞지 않아 계속 감사하기로 하다.
- ④ 전서노회 불법문서 발급의 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아래와 같이 결론 하고 보고하기로 하다.
 - 가. 2017년 11월 6일 총회공문(102-102)에 의거 “제102회 총회 환부 결의 통보”는 먼저 “~ 환부 결의 하였습니다.”로 환부 결의를 통보했고 뒤 이어 나오는 네 문장 “이는 일반 사법 제도에서 ~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은 환부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인 것일 뿐이다. 그표현도 “~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로 표현한 바 지시하거나 결정사항도 아니다, 그러므로 총회회의록을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
- ⑤ 성석교회 관련 불법서류 발급에 대한 조사처리 건을 아래와 같이 결론 하고 보고하기로 하다.
 - 나. 강재식 목사, 임창일 목사는 감사부에서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11시에 출석 요청을 하였지만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특히 강재식 목사는 당사자도 아닌 데 나서서 해충회 행위를 하였고, SNS를 통해 감사부를 비방하였다. 총회장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점에 대하여 총회장이 진위확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하라 지시하였으므로 감사부에서는 이 사항과 두 사람을 교단 언론에 공개하고 사법에 고발조치키로 결의하다.

※ 증언 : 조미예 차장 (경위서 제출)

- a. 질문(최병철 장로) : 제103회 총회 석상에서 성석교회가 소속한 서경노회 보고가 끝나니까 서경노회 임창일 목사와 평양노회 강재식 목사가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로 소속증명서와 대표자증명서를 동시에 요구했는데 국장, 총무도 있는데 왜? 조미예 차장이 발급해주었는가?

답변(조미예 차장) : 안된다고 하니까 강재식 목사가 압박하며 총회장님이 발급하라 했다고 하여 확인하려 총무와 국장에게 확인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겁박을 느껴 직원에게 발급해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b. 질문(최병철 장로) : 원래 규정은 무엇입니까? 총회 파회 후 회의록 채택 후 적법한지를 살펴 발급해야 하는데 왜 발급해 주었느냐?

답변(조미예 차장) :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고 총회장이 떼주라고 했다면 하도 야단이어서 떼주라고 지시했습니다.

(13) 제7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2. 13(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서기 조승호 목사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 하여 채택하기로 결의하다.

② 안건상정

가.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특별감사의 건은 외부감사(회계사 등)를 투입하여 수입, 지출결의서, 통장, 금융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더 시간을 갖고 살펴 볼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주기로 결의하다.

나. 전서노회 고창성복교회 특별 감사 보고의 건은 전 회의록을 낭독하고 태준호 장로의 견해를 청취하다.

다. 서인천노회 임시노회 참관보고서를 보고 받으니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감사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다.

라. 제103회 총회 부서기 정창수 목사 금품살포에 대한 특별감사의 건은 신신우 장로, 김정설 목사, 김성태 장로, 김영달 목사, 모종훈 목사 등 증인에 대한 질의서를 마련하도록 하다. 홍순율 장로에게는 2018년 12월 21일(금) 까지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다.

마. 제102회 통일준비위원회 특별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조사가 끝났으니 보고서 작성 후 올리는 것은 부장에게 맡기기로 하다.

바. 경동노회 독도교회 관련 건은 설립자 원용국 목사가 중부산노회로 갔고, 그 이후 엄수봉 목사가 폐쇄, 매각코자 하여 소송에 걸린 건은 현재 감사 병합하여 추후 처리하기로 하다.

사. 성석교회 관련 건은 서류 검토 후 처리하기로 결의하다.

아.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특별감사의 건(제36회기, 제37회기)은 제38회기 회장과 간사가 증언하였고, 간사는 2018년 12월 21일(금) 까지 경위서를 제출하도록하다.

(14) 제7차 임원회(속회 1)

☎ 일 시 : 2018. 12. 14(금)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특별감사의 건으로 제37회기 회계 이회근 장로, 제37회기 총무 반재부 장로, 김성애 간사를 출석시켜 질의 하다.

서기 조승호 목사 기도 후 정회하다. 오후 12시

박춘근 목사 기도후 속회하다. 오후 1시

② 총회 임원회에서 감사부로 이첩된 성석교회 관련 건은 접수하기로 하다.



- ③ 서광주노회(이준행 목사)의 “총회 임원회의 제103회 총회결의 불이행 감사 처리의 건”은 접수하여 임원회에 맡겨 감사하기로 하다.
- ④ 이외에 일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폐회하기로 동의 제청하기로 결의하다.
- ⑤ 제103회 총회 헌법 개정으로 인한 감사부 업무 참고용으로 헌법책을 구매하기로 하다.

(15) 제8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2. 27(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2회기 통일준비위원회특별감사 보고서 작성의 건은 감사부 결의대로 부장이 작성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 ② 전국남전도회연합회(제36회, 제37회) 특별감사 보고서 작성의 건은 어느선까지 작성해야 할지 추후 논의하기로 하다.
- ③ 제103회 총회 부서기 정창수 목사 금품살포의 건으로 김성태 장로, 모종훈 목사에게 2018년 1월 14일(월)까지 경위서를 제출시키기로 하다.
- ④ 총회 정기감사(중간) 일정을 2019년 3월 11일(월) - 14일(목)으로 변경하다.
- ⑤ 성석교회 관련 불법서류 발급 건에 대한 내용질의 및 의견청취로 차기회의 시 강재식 목사를 출석시키기로 하다.
- ⑥ 금곡교회 신선호 장로가 제출한 중서울노회의 총회결의 불이행 진정서에 대해 다루기로 결의하고 차기회의 시 신선호 장로를 출석시키기로 하다.
- ⑦ 차기회의는 2019년 1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에 모이기로 하다.

(16) 제9차 임원회

☞ 일 시 : 2019. 1. 15(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조승호 목사가 회원점명하니 전원 참석하여 성수가 되므로 부장 최병철 장로가 개회됨을 선언하다.
- ②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결의하다.
- ③ 안건심의 내용을 확인하다.
 - 가. 제102회기 통일준비위원회 특별감사 보고서 작성의 건
 - 나.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특별감사 보고서 작성의 건은 부장에게 맡겨 작성하고 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다.
 - 다. 경동노회 독도교회 관련 건은 중부산노회 원용국 목사에게 질의 받은 경동노회가 포항법원에 제출한 감사부 소견서의 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리기로 하다.
 - 라. 성석교회 관련 건으로 평양노회 강재식 목사를 출석시켜 진술 받다.
 - a. 총회장이 결의 하였으니 발급해 주라고 했다.
 - b. 서경노회 임창일 목사와는 가까운 사이고 본인이 총회에 아는 직원이 없고해서 도와주려고 했다.
 - c. 감사부가 인론프레이를 한다, 감사업무를 벗어났다고 오해했음을 자백하고 사과하다. 황남길 목사 기도 후 정회하다. 오후 12시 15분

- 남태섭 목사 기도 후 속회하다. 오후 1시
- 마. 금곡교회 신선호 장로의 증서올노회 총회결의 도전과 이단방조 의혹 진정의 건은 신선호 장로를 출석시켜 진술 받다.
- 모든서류는 부전하여 절차대로 시행했다.
 - 소원은 유효하나 상소건은 상소가 아니라 고소건에 부전만 해서 그대로 다시 적법하게 서류를 접수하라.
- 바. 제103회 총회 부서기 정창수 목사의 금품 살포에 대한 특별감사의 건은 전남노회 모종훈 목사의 경위서를 2019년 1월 25일(금) 까지 최종수합 후 결정하기로 하다.
- 사. 서광주노회의 건과 새순천노회의 건은 규정 전에 다루기로 결의하다.

(17) 제10차 임원회

☞ 일 시 : 2019. 2. 14(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서기 조승호 목사가 회원점명하니 전원 참석하여 성수가 되므로 부장 최병철 장로가 개회됨을 선언하다.
-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안전심의 내용을 확인하다.
 - 제102회기 통일준비위원회 특별감사 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회의 행위에 대해 경중을 따져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다.
 -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특별감사 보고서 작성의 건은 자금운영에 관련된 통장거래내역, 장부, 기타 제반 업무가 관련 규정에 맞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하고, 상당의 부정행위가 파악되어 금액적인 면에서는 환수토록 조치하기로 하고, 부정행위에 대해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하다. 또한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회칙 제6장 제26조(재정)의 항목 분회의 재정 충당에 대하여 총회의 지원금이 항목에 없지만 지원을 받았으며, 회계 및 행정 장부 보존 관리에 대해 3개월이내의 서류는 본회 사무실에 보관해야 하지만 없다. 입찰내역서 또한 한 건도 없으며 제6장 제30조(재정 지출권)의 지출 절차에 대해서도 회칙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사항이 여러건 발견되었다. 전국남전도회연합회 간사 또한 공모 내지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방관했다고 판단되어진다.
서기 조승호 목사 기도후 정회하다. 오후 12시 5분
김정호 목사 기도후 속회하다. 오후 1시 15분
 - 전남노회 서기 모종훈 목사에게 내용증명으로 경위서 제출을 독촉하기로 하다.
- 서광주노회 총회 임원회의 제103회 총회결의 불이행 감사 처리의 건은 합병추진위 서기 최준환 목사서와 서광주노회, 전남제일노회 양측에 등록되어있는 교회 담임목사를 모두 출석시켜 어느 노회에 속할지 확인하기로 하다.(곡성중앙교회, 광주내방교회, 담곡중앙교회, 담양제일교회, 빚고을중앙교회, 사랑의섬김교회, 우리빛교회, 소망교회, 예능교회, 대성교회, 북면중앙교회, 봉조교회)(총 13명 출석)
- 조미에 차장에게 성석교회 관련건으로 진술을 듣고, 이형만 목사가 제출한 진정건은 동일 내용을 총회 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다.
-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제37회기 회록서기 임종환 장로에게 2019년 2월 21일(목)까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공문발송토록 하다.



- 사. 재판국담당 박강석 목사에게 질문한 결과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건은 재판국의 판결문을 환부했고, 편재영 목사의 건은 특정인의 지시를 받고 서류를 발급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니 없다고 대답하다. 전서노회 이승만 장로 건은 총회석상에서 재판국 판결문을 채택하지 않고 환부 결정을 했다. 이승만 장로 건은 임원회가 환부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다고 답하였다.
- 아. 새순천노회 불법에 대한 감사의뢰 및 해산지시 청원의 건은 조재일 목사, 새순천노회(노회장, 서기, 재판국장)을 출석시켜 확인하기로 하다.(총 4명 출석)
- 자. 차기회의는 2019년 2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에 김정호 목사, 박춘근 목사, 최준환 목사를 포함해 모이기로 하다.

(18) 제11차 임원회

☞ 일 시 : 2019. 2. 27(수)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조승호 목사가 회원점명하니 전원 참석하여 성수가 되므로 부장 최병철 장로가 개회됨을 선언하다.
- ② 서기 조승호 목사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④항목은 삭제하고 받기로 하다.
- ③ 새순천노회 불법에 대한 감사의뢰 및 해산지시 청원의 건은 허위당회, 타지역교회를 무분별하게 영입하여 감사 요청이 들어온 건으로 조재일 목사와 새순천노회 노회장 이형근 목사, 서기 최동규 목사, 재판국장 이영길 목사를 출석시켜 화해하도록 권고하다.

(19) 제12차 임원회

☞ 일 시 : 2019. 3. 21(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조승호 목사가 회원점명하니 전원 참석하여 성수가 되므로 최병철 장로가 개회됨을 선언하다.
- ② 서기 조승호 목사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③ 제103회기 중간감사 미진부서 감사를 진행하다.
- ④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특별감사를 진행하다.

(20) 제12차 임원회(속회 1)

☞ 일 시 : 2019. 3. 22(목)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신대학교 미진부서 연장감사 감사인 선정의 건은 부장 최병철 장로에게 맡기기로 하다. (최병철, 조승호, 동현명, 이은철, 김정호, 박춘근, 남태섭, 양성수, 조평제(총 9명))
- ② 총신대학교 미진부서 연장감사는 2019년 4월 9일(화) ~ 10일(수)에 하기로 하다.
- ③ 통일준비위원회 특별감사의 건은 이은철 목사, 김정호 목사에게 맡겨 2019년 4월 10일(수)까지 면담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21) 제13차 임원회

㉮ 일 시 : 2019. 6. 3(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2회기 통일준비위원회 감사를 총무 이은철 목사가 보고하다.
가. 김용대 목사는 100만원, 남서호 목사는 400만원을 환수하고 1년간 자숙하기로 하며, 김재호 목사와 이기봉 목사는 자숙하기로 하다.
나. 김영태 장로는 입출금 관련하여 통일준비위원회 통장으로 해야 함에도 개인통장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처리 하였으니, 노회와 당회로 하여금 치리토록하기로 하다.
다. 비전트립 관련하여 본인부담금과 총회에서 지원해준 비용과 통일준비위원회로 협찬과 찬조, 광고비 관련하여 확인하다.
- ②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특별감사와 관련하여 양성수 장로가 보고하니, 제36회기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회계 이춘만 장로를 양성수 장로가 두차례 만났고 총회에서 남전도회연합회에 지급한 금액중 잘못 집행된 금액 1200만원을 6월 7일까지 총회로 입금하기로 하고 입금 후에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다.
- ③ 성석교회 불법서류 발급에 대한 감사 건은 감사 보고서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감사부는 불법성에 대한 조사는 하나 처리는 총회 임원회에서 하여야 하기에) 강재식 목사는 노회와 관련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류 발급에 개입하였다. 강재식 목사나 임창일 목사는 제척사유가 있으면서도 임준수 주임에게 총회 현장에서 발급 요청을 하였다.
- ④ 총신대학교 법민국 100만기도후원회의 규정개정에 대한 감사 보고의 건은 총신100만인기도후원회 규정이 전과없이 임의로 개정된 것은 당시 서기 고평석 목사를 출석시켜 진위를 파악하기로 하다.
김정호 목사 기도로 정회하다. 오후 12시
부장 최병철 장로 기도로 속회하다. 오후 1시 30분
- ⑤ 한성노회 전주남 목사의 총신운영이사회비 횡령의 건은 총신대학교 법민국에 3600만원(9년분)을 납부하였고, 총신운영이사회통장으로 납부된 것이 없음을 확인하다. 한성노회 전주남 목사의 총신운영이사회비 횡령 조사의 건으로 진정한 한성노회 노회장 김성경 목사, 서기 서상국 목사, 김용하 장로가 참석하다. 한성노회에서 총신운영이사회비 납부금에 대해 질의하니 3600만원 중 2200만원은 노회에서 받았고 1400만원은 노회에서 덜받았다고 답하다. 이건에 대하여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를 담당으로 배정하여 감사조사토록 하다.

(22) 제13차 임원회(속회 1)

㉮ 일 시 : 2019. 6. 4(화)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조승호 목사의 기도로 속회하다. 오전 10시
- ② 제102회기 통일준비위원회 특별감사 건은 비전트립에 지출된 1인 비용 369만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이었다면 총회 지원금과 통일준비위원회로 광고협찬 받아 사용된 금액 169만원은 환수되어야 하며, 또한 비전트립에 다녀온 후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라도 제출했어야 한다.
- ③ 한성노회 전주남 목사의 총신운영이사회비 횡령의 건으로 오전 10시 20분에 전주남 목사를 출석시키다. (부장 최병철 장로의 질문 / 전주남 목사 답변)



- 가. 한성노회의 총신운영이사가 맞나요? / 네
- 나. 교단에 노회가 합동된 시점부터 총신운영이사를 하였나요? / 네
- 다. 총신운영이사회비 400만원 씩 직접 받았나요? 바로 송금하지 않고 받아서 본인이 갖고 계셨나요? / 인정합니다.
- 라. 그건 배임, 횡령입니다. 총회 부총회장 출마하려고 하니 문제가 될 수 있다하여 한꺼번에 납부하였나요? / 네
- 마. 전주남 목사에게 한성노회 노회장 김성경 목사, 서기 서상국 목사가 이사회비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자 노회직인이 없다며 불응하였다.
- 바. 전주남 목사가 총신100만기도후원회대외협력팀장 김승철 목사와 면담 후 송금했다고 답변하였다.
- 사. 녹취록에서 구체적인 금액(노회에서 받은 총신운영이사회비)이 언급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록이 있나요? /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 아. 목양교회 관련하여 예배처를 드릴 수 있는가? / 네
- 자. 목양교회 관련하여 협상용의가 있는가? / 네

(23) 제14차 임원회

☞ 일 시 : 2019. 7. 10(수)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조승호 목사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결의하다.
- ② 제103회 총회 정기감사는 2019년 8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5일간 진행하기로 하다.
- ③ 감사부 접수 문서 확인 및 결과 처리의 건은 감사부로 접수 된 문서 41건 중 총회 서기로 부터 감사부로 이첩된 건은 8건임을 확인하고, 이에 관련하여 모든 접수된 서류 처리 결과를 제 104회 총회 보고서에 넣어 보고하기로 하다.
오후 12시 김정호 목사 기도로 정회하다.
오후 12시 40분 서기 조승호 목사 기도로 속회하다.
- ④ 지방신학교 감사 및 일정확정은 부장 최병철 장로에게 맡겨 정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 ⑤ 제1차 감사부 임원회 회의일지에서 3항 ②특별감사 -제103회 총회 결의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 3) 동대전제일노회가 청원한 특별재판국 구성의 건은 삭제하기로 하다.
- ⑥ 제103회 총회 중간감사 미진부서(총회 임원회, 총신법인사무국, 총신100만기도후원회)에 대하여 정기감사시 철저히 감사하기로 하고, 특별히 총신 감사는 감사부 전원이 참석하여 감사하기로 하다.
- ⑦ 차기회의는 2019년 7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24) 제15차 임원회

☞ 일 시 : 2019. 7. 15(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조승호 목사가 회원점명하니 전원 참석하여 성수가 되므로 최병철 장로가 개회됨을 선언하다.
- ② 서기 조승호 목사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③ 총회군선교회 교회건축 비리에 대한 진정의 건은 총회군선교회가 신풍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모금하는 명분이 어긋나게 행한 것을 진정한 것으로 특별감사하기로 동의 및 제청을 받아 결의하다. 또한 논산훈련소연무대교회 건축비로 본 교단에서 현금한 30억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도하기로 하다. 위건으로 2019년 7월 23일(화) 오후 3시에 총회군선교회 사무총장 최수용 장로, 서기 안재훈 목사, 총회군선교회 대구지회 사무총장 박장희 장로를 불러 질의하기로 하다.
- ④ 대구노회 박혜근 목사의 권징 제138, 141조 관련 위법사항 조사 요청의 건은 시급함으로 2019년 7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에 대구노회 노회장 장활민 목사, 서기 김대인 목사, 재판국장 김성근 목사, 박혜근 목사를 불러 질의하기로 하다.
- ⑤ 시화산노회 안상환 목사의 한성노회 실태조사의뢰서 관련하여 2019년 7월 23일(화) 오후 3시에 시화산노회 노회장 강명우 목사, 서기 박현정 목사, 김영길 목사, 안상환 목사를 불러 질의하기로 하다.
- ⑥ 통일준비위원회 감사의 건은 총무 이은철 목사에게 일임하다.
- ⑦ 경동노회 독도교회 관련하여 2019년 7월 23일(화) 오후 1시에 남평양노회 이병록 목사, 중부산노회 원용국 목사, 경동노회 노회장 현종규 목사, 장재덕 목사, 박영만 목사를 불러 질의하기로 하다.
- ⑧ 차기회의는 2019년 7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24일(수) 까지하기로 하다.

(25) 제16차 임원회

☞ 일 시 : 2019. 7. 23(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대구노회 권징 제138조, 141조 관련 위법사항 조사의 건은 대구노회 서기 이양수 목사, 박혜근 목사가 출석하여 권징138조, 141조 관련 절차에 대한 내용을 노회측(이양수 목사)과 박혜근 목사 개인 의견을 각각 듣다.
정한시간이 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다른 출석 조사 이후 다시 다루기로 하다.
- ② 교육부 주관 수련회 여행사 입찰 진정에 대한 조사의 건은 교육부 이양수 목사, 김정설 목사, 권재호 목사가 출석하여 모든 자료를 총회 내 해외로 나가는 부서 행사와 똑같이 입찰 접수 등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할 것을 말하고, 총회 회계 부회계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듣다. 입찰규정에 따라 총회총무가 참석 해야함. 접수시 미비서류를 여행사에 전화해서 보완해 받았고, 기준과 맞지 않는데 왜 받아 주었는가? 입찰 기준이 최저가였다가 최고가였다가 고무줄 식으로 바뀌는 것은 잘못된 것임
- ③ 경동노회 독도교회 관련 조사의 건은 현종규 목사, 장재덕 목사, 박영만 목사, 최귀복 목사가 출석하여 엄수복 목사와 이병록 목사의 소속을 아는지 관련된 내용과 노회에서 적합하게 조치를 취하여 교회를 안정되게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경동노회에서 이후 독도교회 관련하여 원만하게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서면을 제출하고 8월 21일 정기감사 시까지 결과처리 결과를 받기로 하다.
- ④ 시화산노회 임시노회 안건(한성노회가 청원한 김영길 씨 이명 청원의건) 조사의 건은 시화산노회 선민장로교회 안상환 목사가 출석하여 서류를 제출한 배경과 경위를 설명을 듣고, 안상환 목사가 제출한 서류는 절차에 맞게 제출되지 않은 서류임을 설명하고, 개인이 올린 서류는 총회 감사부가 정식 접수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파기하도록 지도하다.
- ⑤ 총회 군선교회 교회 건축 비리 진정에 대한 조사의 건으로 최수용 장로가 출석하여 관련내용



을 확인하다.

가. 군선교회 회계가 있는지, 회계장부와 도장이 있는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모든 금전 출납부와 회의록을 남기고, 정식으로 공고하여 입찰을 통하여 계약할 것을 지도하다.

나. 군선교회에 정년이 있는지를 확인하니 정년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지역위원들은 회비를 내지 않는 것을 확인하다.

다. 춘천 2군단에 있는 군교회 기공예배 할 때에는 시공사가 선정이나 아무런 준비없이 예배를 진행하였고, 현장에서 교회건축이 아닌 교육관을 건축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라. 회계기장, 입출금 통장정리, 정관 개정(70세 정년), 모든 회원이 회비 납부 할 것을 감사 시정사항으로 지적하다.

⑥ 대구노회 권징 제138조, 141조 관련 위법사항 조사의 건은 양측의 세부적인 진술을 듣다. 박혜근 목사는 판결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닌,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해 달라 요청하였다. 양측이 원만하게 잘조정하도록 지도하다.

(26) 제16차 임원회(속회 1)

☞ 일 시 : 2019. 7. 24(수)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강재식 목사 관련 함경노회 소속 성석교회 대표자증명서와 소속증명서 불법서류 발급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여 총회로 하여금 발급된 서류를 취소토록 바로 시행하였다.
- ② 법무법인 도영에서 접수한 성석교회 관련 자료협조의 건은 개인이 요청하였으므로 임원회를 통해 거절하기로 하다.
- ③ 함경노회에서 접수한 편재영 목사 관련 건은 총회 임원회에서 총회 결의대로 처리하도록 하다.
- ④ 경동노회 독도교회 관련하여 조사하다.
- ⑤ 전남노회 서만중 목사가 접수한 전남노회 서기 모종훈 목사에 대한 총회 선관위 금품수수 질의의 건에 대하여 다루다.

(27) 제17차 임원회

☞ 일 시 : 2019. 9. 3(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4회 총회 학생지도부장 입후보자 김기성 목사에게 자술서를 받다.
오후 12시 서기 조승호 목사가 정회 및 식사기도를 하다.
오후 1시 총무 이은철 목사 기도로 속회하다.
- ② 제102회 통일준비위원회 서기 남서호 목사는 제104회 총회 재판국원 후보를 내려놓고 자술서를 받고 천서보류는 풀기로 하다.
- ③ 제102회 통일준비위원회 회계 김영태 장로는 제5차 감사부 전체회의(속회 2)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 ④ 김일겸 장로는 외부감사에 맡기고 검찰에 고발토록 하다.
- ⑤ 총회 군선교회 관련 김일겸 장로, 안재훈 목사에게 자술서를 받다.

- ⑥ 총회 임원회(재정부)에 지방신학교 지원 및 실사(대전신학교)에 대해 지원금 배분 규정(신학교 별로)과 지원금 중 5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돌려 받은 근거와 통일준비위원회 재정 배정(아직 임원조직도 하지않았는데 예산을 사용하여 지출이 먼저 되었고 특별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 되어야 하는데 안되어있음)을 지적하다.
- ⑦ 성석교회 서류발급 결재라인에 대해 다루다.
- ⑧ 한성노회 전주남 목사의 운영이사회비 횡령건으로 천서를 제한하기로 하다.

(28) 제17차 임원회(속회 1)

- ☞ 일 시 : 2019. 9. 4(수) 10: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오전 10시 부장 최병철 장로 기도로 속회하다.
 - ① 제104회 총회 감사부 보고 내용을 정리 및 작성하다.
 - 오후 12시 부장 최병철 장로 기도로 속회하다.
 - 오후 1시 서기 조승호 목사 기도로 속회하다.

3) 연장 감사

(1) 제1차 총신대학교 연장 감사

- ☞ 일 시 : 2019. 4. 9(화) 10:30
- ☞ 장 소 : 총신대학교(사당)
- ☞ 결의사항
 - ① 총신대학교 연장감사를 2019년 4월 9일(화) ~ 10일(수)에 걸쳐 시행하기 위해 모이다.
 - ② 총신대학교 연장감사를 동일 오전 10시 50분 박춘근 목사 기도로 시작하다.
 - ③ 오후 12시 5분 조평제 장로 기도로 정회하다.
 - ④ 오후 1시 양성수 장로 기도로 속회하다.

(2) 제1차 총신대학교 연장 감사(속회 1)

- ☞ 일 시 : 2019. 4. 10(수) 10:30
- ☞ 장 소 : 총신대학교(사당)
- ☞ 결의사항
 - ① 감사부로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기로 하다.(최병철, 조승호, 동현명, 이은철, 김정호)
 - ②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특별감사의 건은 제3차 감사부 전체회의에서 고발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양성수 장로가 사랑과 은혜로 기회를 주자는 제안을 하여 맡겨 권면하기로 한 결과 제37회기 임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잠시 보류하기로 하고, 제36회기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 하는 것과 기타 사항은 부장 최병철 장로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③ 오후 12시 10분 회계 동현명 장로 기도로 정회하다.
 - ④ 오후 1시 김정호 목사 기도로 속회하다.

(3) 제2차 총신대학교 연장 감사

- ☞ 일 시 : 2019. 5. 27(월) 10:00



☞ 장 소 : 총신대학교(사당)

☞ 결의사항

- ① 총신대학교 제1차 연장감사(2019년 4월 9일(화)~10일(수))시 미진한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다.
- ② 총신대학교 법인사무국 관련하여 연장감사를 진행하니 법인사무국 직원(총 4명)이 예산 및 업무량에 비해 너무 많은 점을 지적하고 법인사무국 권주식 국장에게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게된 자술서와 법인사무국 유상용 과장에게는 입사과정에 대한 자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하다.
- ③ 법인카드 사용 문제에 대하여 총장 의전 담당 박찬용 기사를 불러 총장 전용의전 차량 주유내역 및 심야에 카드 사용된 내역에 대하여 확인하고 자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하다.
- ④ 총신100만기도후원회 정관 변경 시 회의록에 서명날인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으며, 회의 시 여비 지급에도 서명이 안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다. 적법한 정관 개정 회의 및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외협력팀장 김승철 목사에게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다.

제103회 총회 중간 감사 상비부 지적사항

■ 정치부

□ 지적사항

1. 정치부에 회기 중 수입한 사안 처리는 당연히 정치부가 특별위원 선정을 회기 중 선정 보고 하여야 함에도 총회임원회로 모든 안을 위임처리 하도록 하여 정치가 상실됨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하실 일
2. 중요한 안건 심의와 위원선정을 총회임원회에 위임하는 일은 총회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나 보다 신중하게 정치부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올바른 정치를 세워가도록 할 것

□ 기타사항

1. 총회기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빠르게 정치부가 처리 보고한 것은 장려 할 만 하지만 총회 회무 회의 단축을 가져온 것 외에 사안을 너무 쉽게 처리하여 현의안과 해 노회에 중요한 문제를 졸속처리가 되었다.
2. 정치부의 1~3부로 결의처리(제103회 총회) 되었으나 규칙 수정이 되지 않았고, 현재 정치부의 시행과 1~3부로 나누어 처리 시 문제의 장, 단점을 파악하여 효율성과 문제점의 방안을 강구해야함.

■ 현의부

□ 지적사항

1. 새순천노회 조재일 씨 건은 재판국 이첩의 건이 아니므로 기각 해야함
2. 전서노회 고창성북교회 관련 이승만 씨 상소건은 제102회 현의부에서 '각하'라고 회의록에 기록되어있는데, 제103회 총회에서 '기각'이라고 보고 하였기에 '기각'이 아닌 '각하'로 수정할 것.

■ 재정부

□ 지적사항

1. 재정부에 배당된 회의비 예산 8,000,000원 중 현재 9,210,300원을 지출 하였는바 추경 없이 과다 지출하였음.(추가 지출 1,210,300원)
2. 제103회 총회 상비부 조직 시 지급되던 여비 받지않고, 지방신학교 지원하기로 하여 2019년 2월 8일에 각상비부 예산에서 지출한바 지원한 구체적인 내역을 정기감사 전까지 작성하여 보고할 것.

■ 규칙부

□ 지적사항

1. 제103회 총회 상비부 조직 시 규칙부가 모여서 1차 임원회를 하여 조직하였으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음.

2. 제1차 규칙부 실행위원회(2019.2.11.) 모임을 하였으나 여비와 식비를 지출하였으나 회의록이 없음.

- 1) 임원 여비 : 260,000원
- 2) 실행위원회 여비 : 420,000원
- 3) 식비 : 100,000원

■ 고시부

□ 지적사항

- 1. 임원조직에 있어서 부임원을 두기로 한 것은 반드시 시정조치 할 것

■ 노회록검사부

□ 지적사항

- 1. 1차 실행위원회에서 500만원 추경하기로 결의한 것은 계획서(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함.
- 2. 노회록 기장(기록)은 철저히 수기 작성해야함

■ 재판국

□ 기타사항

- 1. 재판국의 회의록은 타부서와 달리 문자 하나 하나가 중요한바 반드시 수기로 기재 하였어야 하는데, 워드 타이핑으로 하고 있는바 회의록은 수기로 기재할 것
- 2. 평남노회 조총래 씨가 수입한 고소건만 6건으로 병합재판 진행 중인데 상기인은 지난 5~6년간 계속 고소를 하는 상습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다. 총회 재판국으로 하여금 재정적 손실과 재판의 효율성에도 저해가 되는바 상습 고소자에 대한 방안을 강구 할 것.
- 3. 상설재판건에 대해 접수비를 재판국으로 수입, 지출하는 것은 옳으나 현의부에서 서류조차 기각되는 사건을 재판국으로 수지 처리함은 부당하다. 또한 고소고발에 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각시에도 반드시 상설접수비 재정일부를 총회가 수입 처리하도록 할 것

■ 은금부

□ 지적사항

- 1. 은퇴목사 해외수련회로 하지 말 것(1748명의 은퇴목사 중 12명 참석함 6가정+임원4명)
- 2. 회의록 기록의 기본이 안되어 있음(동의, 제청 삭제하고 결의사항만 기록할 것)
- 3. 임원 입후보자들에게 찬조 받는 것을 중지 할 것.
- 4. 3구도로 1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결과를 보고할 것
- 5. 원로장로회 지원금은 법으로 맞지 않음
- 6. 수련회(해외) 여행사 선정 광고 게재 건은 회의록이 없이 37만원 지출
- 7. 은퇴목사 지원금(102회기) 100만원 × 22명 선정에 대한 객관성

■ 순교자기념사업부

□ 지적사항

1. 총회임원, 순교자에 대한 길흥사(축금, 조의금) 지출에 대한 결의 지침서가 없음.

■ 사회부

□ 지적사항

1. '다문화 가정' 사역이 선교로 이어지도록 GMS 한국 내 외국인지부와 연계한 방법을 찾아보길 바람(GMS 전철영 총무)
2. 매년 세미나를 통해 좋은 결론을 도출하느라 애쓰는데 그 결과물을 각 지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도록(예 : 애니메이션 등)
3. 한센인 단체와 장애인 단체의 지원금에 대해 두 단체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정관, 조직표, 사업계획서에 나온 행사의 구체적인 설명서를 정기감사 시 까지 제출하고, 사회부는 그 내용들을 실시하여 설명해줄 것.

■ 교육부

□ 지적사항

1. 중간감사는 주요행사가 아직 집행되지 않으므로 후반기 감사 시에 정확한 내용을 감사함이 가함.
2. 교역자 하기 수양회 일정 변경으로 혼란을 오게 하므로 빠른 시간에 재공고 후 추진토록 요함.

■ 면려부

□ 지적사항

1. 지적사항 없음.

■ 학생지도부

□ 지적사항

1. 세부계획서가 없으므로 예산서, 영수증을 첨부할 것

■ 신학부

□ 지적사항

1. 현재 회의비 지출이 예산의 80%가 지출되었다. 차후 12번의 회의를 예상하고 있는데, 추경할 계획인지 심히 우려됨.
2. 조사한 것은 언론 기사와 방송의 내용을 첨부 했으나, 연구와 대처 방안이 철저하게 연구하고, 대처방안을 준비가 필요함.



■ 전도부

□ 지적사항

1. 제1차 실행위원회(2018.10.11.)에 참석자 20명인데, 여비지출을 21명하여 1명 초과 지출함
2. 제1차 실행위원회(2018.10.11.)에 참석자 20명인데, 식비지출을 26명분 하였음. 6명분 초과 지출함.

■ 농어촌부

□ 지적사항

1. 관광도 중요하지만 영적 수양회가 된 것 같아 잘하였음.
2. 회의록 중 서기 사인이 없음

■ 군목부

□ 기타사항

1. 군목 후보생 수가 증가하므로(4~5년 전보다 3배 증가) 예산 증액이 필요함.
2. 군목부 수련회(베트남 다낭 2019.4.8.~12) 여행경비 중 본인 부담금은 1인당 200,000원 부담하게 한 것은 군목부 수련회 역사상 최초이므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는 실례임.
3. 여행사(하나투어) 선정은 입찰을 통하여 잘하였으며 군소 여행사 로비를 피하고 공정하게 잘하였음(여행 시 보험 보장 잘되는 회사로 선정됨)
4. 군목부 특수성 때문에 임원은 전문가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됨.

■ 경목부

□ 지적사항

1. 경목부는 회의비가 연간 7백만원인데 상반기에 회의비를 6백9십만원을 사용하여 하반기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출을 하였다. 따라서 추경예산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회의 효율성과 계획성에 문제가 있다.(재정운영에 계획성 결여)
2. 경목부가 경찰청 방문과 경목 활동 격려 지원이 매년 서울로 편향방문 지원함으로 지방 경목들의 소외감에 있는바 해소차원에서라도 계획성을 가지고 하실 일
3. 매년 진행되는 경목 수련회도 관행처럼 해외에서 진행하여오는바 사기 진작에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격년 혹은 계획성 있게 2~3년에 한번정도 시행하실 일

□ 기타사항

1. 경목부가 경찰선교회 폐지로 재정적 유익을 총회로 가져온 일은 효과적이다.

■ 구제부

□ 지적사항

1. 행정담당자가 한 노회에 편향지원 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노회별 지원 데이터를 작성하여 감사 시 보고하도록 하고, 구제부가 지원 전에 살펴 행정 하도록 해야 한다.
2. 지난 5년 동안 각 노회별 지원 현황을(특별포함) 파악하여 정기감사 시 보고하도록 한다.

■ 출판부

□ 지적사항

1. 출판부 직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가 되어야함. 출판부 직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바(편집, 제작, 교정) 그 분야에 숙련이 요구되는 사람을 길러내야 함
2. 출판부의 노력으로 신앙월력의 상향을 가져온 것과 재고의 5%는 격려할만한 임



제103회 총회 중간 감사 상설·특별 위원회 지적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 지적사항

1. 회계장부 보조원장은 기간별(2018년 9월1일~2월28일)로 하되 동시에 총회 회기별 구분도 같이 할 것.
2. 제1차 임원회 시(19.1.3) 질의사항 4번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서류제출 문제는 총회선거규정 대로 진행할 것.(은급재단 연금가입 증명서 제출 결의는 불법임)
3. 입후보자들이 세례교인 헌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지 살펴 볼 것.

■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 지적사항

1. 미국 이단세미나는 이단의 피해 사례가 너무 심각하다는 절박한 요청으로 인해 가게 됨을 확인함. 단, 모든 경비는 자비로 부담하기로 할 것
2. 캄보디아 이단세미나 역시 심각한 피해로 인해 선교사의 요청 편리에도 불구하고 강사만 보내라고 함.
3. 예산에 비해 너무 많고 행사를 계획됨

□ 기타사항

1. 이단대책 세미나는 매월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지역별 3~4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슬람대책위원회

□ 지적사항

1. 결산보고는 잘되어있으나 반드시 위원장과 회계의 싸인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과 회계의 싸인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과 회계의 싸인이 있어야 한다.<책임문제>
2. 2019년 2월 26일 3차 회의는 '회의성수'가 되지도 않는 2인으로 세미나 및 아카데미를 결정하여 결정된 모든 계획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은 결의 성수 미달로 결의된 것임
3. 행정담당자가 회의록을 별도로 타이핑하여 보관하더라도 감사 제출 시 반드시 서기와 위원장의 싸인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야함.

■ 통일준비위원회

□ 지적사항

1. 사업계획서에 없는 사업이 집행됨. (임원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전에 결의하여 시행 함)-한반도 녹색 평화운동위원회
2. 통일화합나무심기 분담금 사전지급의 건(임원회 결의는 11월8일, 모목금 지급은 10월11일)
3. 정관에 한 지역에서 6명씩 선정 기준이 있지만, 한 노회에서 2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보완되어야 함

■ 교단연합교류위원회

□ 지적사항

1. 한국기독교총연합 관계로 인하여 위원장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
2. 분과별로 조직하였으나 활동사항이 없이 임원회만 함.
3. 회의록을 기록 시 누가 봐도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 할 것

□ 기타사항

1. 3월 22일 회의 소집하여 분과별 활동할 예정이라고 표명

■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 지적사항

1. 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관련경비는 규정에 따라 집행 할 수 있도록 매뉴얼(규정)을 마련해야 하여 집행해야함.

■ 총회역사위원회

□ 지적사항

1. 2018년 7월 3일 전국기독교역사 및 순교사적지 및 유물지정 시행세칙
2. 노회 현의 사항을 중심으로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 현장 실사 및 조사 발굴차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지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음
3. 현판 제작을 처음보다 더 구체적인 안내문을 제작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지정 현판만 설치하고 있으므로 지정된 유래 등 구체적인 안내문을 제작하기를 요함(비용은 약 5배 이상 소요 됨)
4. 타 위원회는 5명인데 역사위원회는 20명이다. 인원수가 너무 많음.
5. 3. 1운동 10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계획(안) 중에서 예산을 세웠으나 수입에서 차질이 생기므로 행사 진행에 계획을 철저히 파악 확인하여 행사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임할 것
6. 3. 1운동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역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는지? 선택과 집중으로 역사위원회 본래 사업에 집중할 것.

■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 지적사항

1. 제2차 임원회의에서 총신여동문회 박유미, 이월순 회장의 여교역자의 현실에 관하여 경청했다고 기록되어있는데, 회의록 작성 시 경청내용을 간략하게라도 기록 할 것



■ 장학재단설립위원회

지적사항

1. 실무자가 소집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할 수 없다'고 했고 부서장(국장)에게 보고되었음
2. 장학재단설립위원회는 담당자의 '위원회 진행 확인서'에 의하면 폐지함이 가한 줄 압니다.

■ 칼빈기념사업위원회

지적사항

1. 회의비(여비) 지급 시 서명 받을 것.

■ 교정선교위원회

지적사항

1. 전체위원(15명) 총회임원회 추천 7인, 전도부 8인 인원이 많음
2. 회칙(정관) 개정필요(제2장, 제3장)
3. 직전회무 중 잔고 27,000,000원을 적극 활용 할 것(조속히)

기타사항

1. 찬조 없이 총회 예산안 안에서 행사 진행은 긍정적임

■ 총회회관건축위원회

지적사항

1. 사업진행 중에 있으므로 아직 특이사항 없음

■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

지적사항

1. 실사를 진행 중이므로 8월 정기감사에서 면밀히 해야 할 것임.
2. 위원회 명칭 관련하여 교회 실사가 아니고 당회 구성 실사위원이 정확한 표현이라 사료됨.

■ 예산심의위원회

지적사항

1. 재정 지출에 있어서 회의록에 작성된 내용과 회의 여비 지출내용이 맞지 않음.

■ 총회교육진흥위원회

지적사항

1. 교육진흥위원회라는 명칭부터 헌의내용과 전혀 맞지 않음. 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연구 관련 청원이므로 청원에 맞는 역할을 하기 바람

2. 제103회기 전반기 감사를 진행하는 시점에 단 한차례 모여 조직만 하고 업무가 진행되지 않음은 위원회의 의지를 의심케 되므로 신속히 연구 활동을 진행할 것
3. 위원회 활동 중. 연구, 자문은 교수 또는 목회자를 추천 받아 역할토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임.

■ 세례교인헌금연구위원회

- 지적사항
1. 특이사항 없음

■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 지적사항
1. 지적사항 없음.

■ 재개발특별위원회

- 지적사항
1. 총회산하 지교회에 협조공문 발송 결과 보고한 노회와 지교회의 협조가 미비함
 2. 이단을 제외하고 타교단과 협조하여 연합적으로 피해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잘 되었음.
 3. 해당 교회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

- 지적사항
1. 조직을 위한 1회 모임밖에 모임이 없었던 아쉬운 점 있으나 열심히 활동하여 주시기 바람.
 2. 계획한대로 진행하여 주기 바람.

■ 총회인준신학교출신자 총회신학원 입학청원 특별위원회

- 지적사항
1. 본 특별위원회는 의욕을 갖고 시작 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임원회에 맡긴 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므로 인해서 본위원회는 사실상 4회 모임하고 종료한 상태임
 2. 총회 신학원 이름은 어떤 근거로 사용했는지, 유지재단 정관을 이용할 것이라면 정관은 반드시 규칙부를 거쳐서 총회 통과 후에 사용해야함

■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 특별위원회

- 지적사항
1. 회의를 1회만 했으며 조직만 했음.
 2. 총신 정상화를 위해 진전이 있어야 함.



■ 목회대학원 운영 및 조사처리위원회

지적사항

1. 총회보고 녹취록 제출할 것
2. 관련자료 수집을 철저히 할 것(이충선 목사, 하귀호 목사, 신정옥 간사 등)

■ 특별재판국

지적사항

1. 행정담당자의 보고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검표의 결산보고서 특별재판국은 국장과 회계의 사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03회 총회 중간 감사 산하속회 지적사항

■ 전국남전도회연합회

□ 기타사항

1. 제103회 중간감사를 시행하려하니 회계장로가 사임하여 장부기록에 공백이 생겨 기록이 안되었고 간사가 부분부분을 기록했지만 완벽하지 않아 38회기 중간감사는 정기감사시 일괄 시행토록 함.

■ 전국여전도회연합회

□ 지적사항

1. 내빈 접대 시 식사 접대가 과다 지출 됨 (8월 24일 3인 식대 246,000원, 12월 5일 5인 식대 249,700원, 11월 14일 3인 식대 267,300원)
2. 규정 없이 강사 사례비 차등 지급함 (김종혁 목사 300,000원, 길자연 목사 500,000원)

■ 기독교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

□ 지적사항

1.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잘하고 있으며, 지적사항 없음

■ 전국주일학교연합회

□ 지적사항

1. 예산 관련된 것은 교육과 주일학교 부흥을 위한 편성은 전무할 만큼 문제점이 많이 있음
2. 표창 관련하여 경력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여 진행할 것
3. 연합회 역원 분담금은 현재 6.7%로 저조함으로 역할 강화토록 할 것.
4. 전임 회장 예우 : 여비 지출 및 업무 간여하지 말 것(지도적인 차원만 할 것)
5. 교사 수양회(2019.8.5.(4박5일) 예배장소 및 여행사 입찰시 견적 등 근거 확실히 갖출 것
6. 사업계획 추진을 임기 중 연속적으로 효율성 있게 실시 요망
7. 지출결의서, 품의서, 금융거래내역서, 회의록 작성 지적



제103회 총회 중간 감사 산하 기관 지적사항

■ 유지재단

□ 지적사항

1. 건물관리, 임대료, 기타, 예산서 특이사항 없음.

■ 은급재단

□ 지적사항

1. 소송비 진행중인 사항은 반드시 계속 진행 할 것
2. 이사회 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교육 할 것
3. 소송절차가 나온 후 매각 할 것
4. 전문이사를 선임하고 방안을 연구 할 것

■ 사회복지재단

□ 지적사항

1. 직원 1명으로 53개소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듦으로 향후 운영 주체인 시설에서 총회로 약간의 관리비를 내어주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
2. 총회 직원 1명으로는 복지시설 관리, 감독이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으므로 시급하게 직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사료됨
3. 사업유형별 시설장, 실무자 모임이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총회 담당자가 계획하고 시행할 것.
4. 재단 자체규정을 빨리 만들어 규정에 의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사료됨. 정기감사까지 규정(초안)을 제출하여 규칙부를 통해 제정 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03회 총회 중간 감사 기독교신문 지적사항

■ 기독교신문 총무국/편집국

□ 지적사항

1. 기독교신문사 내에 제호 문제, 폐간 문제 등이 해결이 안되고 있음.
2. 기독교신문사 주필인 김관선 목사는 2019년 1월 22일자로 주필에 취임하였다. 제93회 총회결의에 따르면 기독교신문 사장과 주필은 총대를 겸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현재 김관선 목사는 총회 상설위원회 활동 및 총대 활동을 하고 있기에 총회결의를 위반하는 것임.
3. 제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며 일반 언론들뿐만 아니라 교계언론, 개인언론사들도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기독교신문사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새로운 수입구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4. 매번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내부에 고액 연봉자들의 실질적 업무와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입취재 기자 2인을 모집한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음.
5. 현재 기독교신문 손익계산서에서 총매출대비 인건비가 약60%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봤을 때, 기독교신문 이사회에서 자체 구조 조정안을 마련하여 총회에 보고가 필요함.



제103회 총회 중간 감사 총회세계선교회 지적사항

■ 세계선교회 행정국

□ 지적사항

1. 제102회기 감사 지적사항 중 재차 시정을 요한 사항을 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여전히 시정 미 이행에 대해 정기 감사 시까지 상정하여 개정 절차를 밟아 보고할 것.
2. 정관 3장 7절 5.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이사장 임기에 맞추어 1년조, 2년조로 운영할 것.
3.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 1) 위기관리팀의 실제적 위치와 역할을 확립하고
 - 2) 전문위원회 내 '멤버케어위원회'를 신설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됨.
4. 위원회가 5개 외에는 뚜렷한 활동이 없는바 조직에서 부터 활동에 이르기까지 활성화 방안을 낼 것.
5. 예배당 지붕 공사와 관련 3개 업체 견적과 정기임원회 결의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바 추후 총회 '예산지출 시행세칙'에 근거 적법하게 구매, 공사 계약 업무가 진행되도록 할 것.
6. GMS 업무 본부 운영세칙 제5장 제4절 제13조를 총회 '예산지출 시행 세칙'에 맞도록 개정할 것.
7. 노회 파송이사의 이사회비 납부 실적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세계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총회 총대 중에서 GMS로 파송해주는 GMS와 노회 파송이사는 GMS 이사회비 납입 증명서를 총대 천서에 첨부하도록 총회에 현의함이 좋겠다고 파악되니 청원 할 것.
8. 홈페이지 관리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류를 발급하고, 이사회비 납부 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영어로 활용하는 완성도를 높여 보고 할 것.
9. 운영규칙 2장 3절의 본부 선교사 임기를 3년으로 정해 놓은 타당한 이유가 있겠으나 부임하여 숙지하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될 터인데 3년이 적절한지 숙지해서 보고할 것(연임이 가능한 여부 검토 할 것).

■ 세계선교회 훈련국

□ 지적사항

1. 선교사 훈련과 재교육 담당 간사를 보충할 것.
2. 선교사 훈련과 재교육을 구분할 것.
3. 총신 대학, 대학원 과목 가운데 선교에 대한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할 것을 연구할 것.
4. 교관 재정 지원 확대
5. 현지 지도자를 한국에 초청해서 GMS에서 훈련 받고 프로그램을 연구 추진할 것.
6. 선교사 훈련을 위한 해외 훈련 센터를 연구할 것.
7. 선교사 재훈련은 활성화 할 것.
8. 선교사 케어 영성 훈련을 강화 할 것.
9. 선교사 선발 과정을 철저히 할 것(소명감, 정신감정 등)
10. OMTC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8월 정기 감사 까지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고 보고하도록 아울러 OMTC 이사회 회의록과 재정 상황(6회기 OMTC 집행 내역)을 제출 할 것.
11. 선교사 계속 교육, 연장 교육, 교육 프로그램 담당하는 간사 1인을 충원하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

■ 세계선교회 선교국

□ 지적사항

1. 선교국에서 중요한 업무 중에 선교사 위기 대처할 제도와 역할이 전무한 상태로 중국 파송 380여명 중에 300여명이 추방한 상태로 인도 파송하여 50여 가정 중에 40여 가정이 추방 상태이나 추방 후 대처 방안이나 현재 추방된 후 후원교회와의 관계, 재배치, 심리상태, 현재 두고 온 선교지 관련 파악상태 그 어떠한 방안과 대처 능력이 없으므로 정기 감사 시까지 신속히 대안을 마련할 것.
2. OMTC 훈련원 운영 문제점은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총 46가정 중에 후원 교회가 없는 선교사가 27가정이며 15가정이 선교사 회비(행정비) 미납자이며 단기 또는 장기 선교사 매뉴얼을 따르도록 함이 좋으며 본부 통제 기능을 발휘토록 요함.
3. GMS 파송 선교사 1,422가정(총 2,557명) 중에 110가정이 선교사회비(행정비) 장기 미납자로 6월 말까지 처리 보고 할 것.
4. 재배치 실행지침(행정절차)
 - ① 이수자 ② 단계별 ③ 진행중인 자(89명)
 - ④ 이수하지 못한자(44명) 결과보고 할 것.
5. '이주민선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볼 것 (정기감사 시까지)

■ 세계선교회 재정복지국

□ 지적사항

1. 건물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기타 안건으로 매각이 처리되는 건으로 시작해서 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시작되는 건은 문제점이 된다.
2. 정관이 매각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GMS 이사회 결의로 처리를 하고 총회에 보고를 하고 처리를 했으나 문제는 총회에서 산하기관의 모든 정관을 규칙부를 통과하고 총회 현장에서 2/3의 통과 후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무시 한게 문제임.
3.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자체 GMS 감사부의 통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 규칙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4. 직원들은 행정과 총회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5.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추경 결의 없이 예산을 넘겨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임.
6. GMS 정관 세칙이 있는데 세칙부분에서 재정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고 본 총회의 허락을 득해 세칙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관악 아파트 건은 정기 감사 시 모든 회의 자료 및 통장을 일차적으로 제출할 것.

■ 세계선교회 사회복지재단(요양원)

□ 지적사항

1. 감사 수검 자료를 준비 할 때에 요양원 시설, 직원 복지후생, 환자 증감, 위생 안전 등의 현황이 준비되어야 하고 요양원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서류를 통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정기 감사 시엔 잘 준비토록 할 것.
2. 담보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7천 만원 받음. 토지, 통장, 직원 퇴직금 적립금조차도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이다. 그렇다보니 요양원 등급이 'D--'이고, 시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임. 현재



몸집을 줄여온 것이 1년 반 정도 된 지금이다. 채무에 대한 변제, 상환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 요양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함.

3. 주일에 원장 남편 선교사가 외부에서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시정해야 할 것.
4. 3월 안에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4월부터 시정할 수 있도록.

제103회 총회 중간 감사 교회자립개발원 지적사항

■ 교회자립개발원

□ 지적사항

1. 기관 운영이 정관, 규정대로 할 것
2. 장학금 대상자 선정하는 채점 매뉴얼(규정)이 있어야 함 - 정기감사 시 까지 제출할 것
3. 제102회기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수기 회의록으로 기록하라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에도 시정되지 않고, 컴퓨터로 타이핑하여 도장을 찍음 회의록 변조 및 위조의 소지가 있기에 시정되어야 함.
4. 재정 지출시 품의서 작성여부와 관련하여 지출된 영수증 등의 지출내역서 등의 확인이 필요함. 감사 시 재정 관련자료 일체 감사받을 것.
5. 제103-1차 임원회시 실무부이사장은 교회자립개발원 정관에 없는 직책이고, 임원회 조직을 전체법인이사회가 아닌 임원회에서 임의로 조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6. 현재 교회자립개발원 직원은 예전 총회본부에 근무하던 자로, 총회에 대한 특정한 이유로 퇴사한바가 있는데, 총회 산하기관으로 입사하여 근무함은 옳치 않음
7. 정기감사 시 감사 미비된 것이 많이 있기에 연장감사 할 것을 요청함.



제103회 총회 중간 감사 총신대학교(사당, 양지) 지적사항

■ 총신대학교(사당) 법인사무국

□ 지적사항

1. 법인국 추가 직원 채용에 관하여 관련된 이사회 안건이나 보고 자료가 없이 회의 중 결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고 급해게 이루어진 부분임.
2. 법인국 직원은 기존 2명이 있지만 추가로 한명 더 채용하므로 연간 직원급여 1억 5천만원이 지출되는 것은 예산과 업무량 등을 고려 해봐도 타당하지 않음.
3. 직원 채용 시 직원 채용에 대한 채점표가 전혀 없고, 해당 직원 입사 시 추천서를 써주었던 당 회장 교회에서 채용 후 5000만원 후원금이 들어온 것은 의심을 살만한 행위임.

■ 총신대학교(사당) 100만인기도후원회

□ 지적사항

1. 100만인 기도후원회는 총회산하 전국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것이기에 감사에 총신운영이사회 위원과, 총회감사부장을 당연직으로 3인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2018년 8월 20일 3인을 2인으로 줄이고 6조 4항을 삭제하여 총회 감사부장과 총신운영이사회를 감사인 자격에서 삭제해 버렸다. 수정단계에서 총회와 관련된 부분들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고 졸속으로 처리하다보니 날인도, 규정이 등재도 되어있지 않고, 현재 총신 홈페이지 게재 조차도 안되어 있음.
2. 2016년도 6월 이○○학생에게 총동창회 지정장학금과 100만인 기도후원회 장학금 2중 지출된 것으로 기록되어있으나 단순행정실수임을 확인하여 앞으로 명단 작성 시 더욱 신중할 것을 지적함.
3. 100만인 기도후원회 이사 변경명단에서 현재 이사들 중 100만인 기도후원회와 상관없이 기존 특정인과의 관계에 따른 인사들로 배정된 것은 잘못된 것임.

■ 총신대학교(사당) 기독교교육연구소

□ 지적사항

1. 세미나 및 강사 사례를 및 순서자 여부 등 총회규정에 의하여 본인 서명 후 은행 계좌 이체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신대학교(사당) 재무회계팀

□ 지적사항

1. 학교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재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협력하여 잘 운영되고 학교 기금도 잘 관리되고 있고, 학교 운영에 총회적으로 재정적 후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학생들의 감소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됨.

■ 총신대학교(사당) 교무입학팀

□ 지적사항

1. 교과부 C등급을 받고 매년 학생 수 10%~17%의 감축이 예상되는바가 분명해졌다. 국가 장학금의 지원은 있다 하지만 4년 후가 되면 최소 7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었다.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①학생수 감소 ②재정적>
2. 교무입학팀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대안을 강구하라 핵심은 안양성결대학은 총신대보다 저조했는데 현재 14:1이 되는 바 총신보다도 입학률이 높은 경우가 되었다. 입학에 위한 별도 홍보를 위한 팀을 세우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 기타사항

1. 과거는 사명감으로라도 우수학생이 총신대로 입학했으나 지금은 어려운 실정으로 총회가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 차원에서 집중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2. 총신이 조속히 평정해야 한다. 대학은 3:4:1 비율이었지만 신대원 MDV는 정원을 겨우 채우는 현실적인 상황임.

■ 총신대학교(사당) 생활관

□ 지적사항

1. 사당 생활관 수용인원 300명이다. 생활관 이용 학생은 새벽기도회 출석 70%로 규정되어있으나 목회자 희망 학생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전원 기도회에 참석을 요하며 학업은 교수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나 영적신앙 양성은 사목 목사님의 특별한 지도가 있어야 함.
2. 건물이 47년 노후되어 건물 완전 진단이 필요하고 현재 방배정 4인실에서 현실에 맞게 2인 1실 배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학생 생활 복지에도 많은 배려를 요청함.

■ 총신대학교(사당) 평생교육원

□ 지적사항

1. 다양한 교과 과정으로 비학위 과정을 개설하므로 학교의 재정적 유익을 가져오는 평생교육원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유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제도(학교 수업에 유익성을 가져오는 직원에 대한 시적인 진급제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 총신대학교(사당) 총무시설관리팀

□ 지적사항

1. 학교의 소요로 인해 인사이동이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으로 수검사항에 준비가 소홀한바 8월 정기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것.
2. 현재 총무시설 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가 1대, 승합차 2대, 총장차량(카니발) 1대인 바 차량관리에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승합차를 2대까지 운영상 필요가 없는바 손상될 대로 구입하지 새차는 구입하지 말 것.
3. 입찰구매팀과 관리팀이 함께 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구매와 관리는 분리해서 운영되도록 할 것(조직개편 시)



■ 총신대학교(사당) 총무시설관리팀(식당)

□ 지적사항

1. 식사의 부실에 대한 의견이 있다. 결과 : 식사자율배식(밥, 김치) 그 외는 종전대로 3월 18일 (월) 실시할 것.
2. 식사의 문제들은 별로 없으며 잘 진행되어 있다.

□ 기타사항

1. 직원들에(7명) 대해서는 용역이 아닌 학교소속으로 변경되기를 원하며, 어려울 시는 주방장, 부주방장 2명만이라도 변경이 필요함.
2. 급식에 있어 더 좋은 급식을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 학교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 총신대학교(사당) 교직원인사

□ 지적사항

1. 총신 정관 제55조 ②항의 11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 한다는 부분은 과반수도 안되므로 수정이 필요함.
2. 과거 임용된 사람의 점수 채점 등 인사관련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감사를 위해 가져온 개인 신상이 적힌 수감표는 감사직후 필히 파기할 것.

■ 총신대학교(사당) 교학지원팀

□ 지적사항

1. 대학원(사당동) 석박사과정으로 7개의 대학원을 개설하고 직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임교원은 상담 대학원만 전임교수가 2인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입학생은 학교소요로 10~20여명이 지원자가 줄었다. 따라서 7개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전임교원 1인을 세워 적극적으로 방안을 세울 것.
2. 대학원에 기탁 장학금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여 대안을 만들 것 *옵션에서도 경쟁률이 타 대학원 보다 떨어지는것에 대한 방안)

■ 총신대학교(사당) 도서관

□ 기타사항

1. 교과부가 3년마다 도서관 평가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시가 내려가 있는데 현재 직원이 3인으로 사서 2인이 계약직으로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 도서관 평가는 대학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는바 전문직 1인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부서에 사서자격자가 있으므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도서관 내년 평가에 대비할 것.

■ 총신대학교(사당) 교육방송국CSBS

□ 기타사항

1. 1년 예산 1600만원으로 교육방송 운영으로 어려움을 기획실에서 예산 반영이 적실히 필요함.

■ 총신대학교(사당) 교회선교연구소

□ 기타사항

1.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며 좋은 심포지움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

■ 총신대학교(사당) 총신대보사

□ 기타사항

1. 학내문제로 인해 학교가 어려울 때 언론의 책임감당을 잘하였는지 돌아보고 학교에 좋은 소식을 널리 알리는 좋은 신문이 되고, 역사를 이어가는 대학신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기를 바람.

□ 기타사항

1. 총신대보사 1년 예산 4,700만원 신문발행부수 8500부, 우편발송 부수 8200부 각 기간 총회 및 교회에 광고 협조, 기획실에서 예산에 반영이 필요함.

■ 총신대학교(사당) 유치원

□ 지적사항

1. 총신 유치원 운송수단인 통근버스를 자체 차량의 감가상각에 준하여 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이 미흡하여 현실에 맞추어 적립하는 것을 요하며 차량 운행에 안전을 필수로 운영을 해야 할 것.
2. 유치원 규정에 아주 적합하게 학업에 열심을 다하고 있으며 오랜 전통의 좋은 이미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주길 바람.
3. 건물이 34년이 되어서 노후되어 건물 신축이 필요로 함. 학교에서 배려하여 검토할 것.

■ 총신대학교(사당) 전산정보팀

□ 지적사항

1. 학교 홈페이지에 변경된 학교정관을 확인하여 수정할 것.
2. 학교홈페이지에 총신운영이사회 메뉴를 닫은 상태이므로 메뉴를 다시 활성화 시킬 것.

□ 기타사항

1. 개발이 8월 하반기 새롭게 개발되어 교체된다.
2. 직원인원이 6명에서 5명으로 감축되어 약간의 일이 벽참을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한 인원 확충을 요함.



■ 총신대학교(사당) 교육복지팀

□ 지적사항

1. 장학금은 등록금, 기탁금, 국가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국가장학금 제2유형만 학교평가 후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별 영향이 없는 바이지만 현재 직원 3인 중 장애우가 있고 장애우를 살펴야 하는 업무 과중이 있음.

■ 총신대학교(양지) 문소기독교박물관

□ 지적사항

1. 박물관 건축기금 68,401,241원을 임의건축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원래대로 돌려 놓을 것.
2. 상설 전시실 공간을 더 확보할 방안과 총회회관 역사박물관과 교환 전시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할 것.

■ 총신대학교(양지) 신대원교무지원팀

□ 지적사항

1. 교육과정 설계시 Th.M이 아닌 M.Div. 본연에 맞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방안을 연구하여 결과물을 보고할 것.

■ 총신대학교(양지) 신대원학생지원팀

□ 지적사항

1. 장학생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가지고 하실 것과 군목후보생 장학금처럼 선교사 후보생 장학금 지급을 연구할 것.

■ 총신대학교(양지) 원보사

□ 지적사항

1. 신문의 편집 및 제작, 출력 및 발송에 대한 계약을 총회 규정에 맞게 진행 할 것.

■ 총신대학교(양지) 성지언어연구소

□ 지적사항

1. 지난 5년간 성지순례 계약서 입찰관련 서류 일체를 8월 정기감사 시까지 제출하고, 반드시 관계자가 출석하여야 할 것.

■ 총신대학교(양지) 경건생활지원팀

□ 지적사항

1. 양지 상담센터의 상담일지를 제출하실 것과 영성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볼 것.

■ 총신대학교(양지) 생활관

□ 지적사항

1. 생활관 입사비의 현실화 방안과 향후 생활관 공실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총신대학교(양지) 도서관

□ 지적사항

1. 2015년 미국 대학에서 구입한 책 약 7만권 정도를 2016년도 개관하여 잘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 충원이 시급함.

■ 총신대학교(양지) 글로벌개혁신학팀

□ 지적사항

1. 교수, 직원, 총회 관계자들이 글로벌 과정에 선교적인 마인드로 접근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2. 세계선교의 유용한 도구임이 분명함으로 총회와 GMS차원에서 검토할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이 발전의 첫 번째 요건이라 보며 직원의 고용계약을 살피기 바람.

■ 총신대학교(양지) 양지 총무시설 관제팀

□ 지적사항

1. 양지 소래교회는 폐가 상태로 기와 밑의 황토가 탈락되어 기와가 떨어지고 창호지 성한 것이 하나 없을 정도로 민망하게 되었는데 우리교단의 중요 성지순례 코스로 많은 성도들이 방문하는데 개보수가 시급한 상태이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올렸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황해노회와 소래노회에서 각각 오백만원을 지원이 필요함.



제103회 총회 정기 감사 상비부 지적사항

■ 정치부

□ 지적사항

1. 정치부 본연의 직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특별위원선정, 중요한 안건심의 등을 임원회에 위임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2. 정치부를 분리하는 총회 안건결의는 규칙부를 거쳐 법에 맞게 처리해야 하며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특별위원선정에 있어 총회 규칙과 정관에 의거 시행할 것.(당연직, 총회임원 배정 등 맞지 않는 일을 시행하지 말도록)

■ 헌의부

□ 기타사항

1. 헌의부는 총회규정대로 회의 및 헌의를 잘 진행하고 있음

■ 재정부

□ 지적사항

1. 상비부 및 위원예산 추경시 총회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재정부에서 전체 총회예산이 건전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피고 적법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재정을 재정부에서 객관적으로 심의하여 조율할 것.
 - ① 전체 상비부, 위원회, 연합회에 지출된 것을 살피고 관리 감독해야 함
 - ② 감사를 받기 위해 수검자료(표)를 준비할 시에는 전체 총회 예산 및 사용 내역 등의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것

■ 규칙부

□ 지적사항

1. 회의록은 원본을 첨부할 것.
2. 선거규정 제4항 제13조 1항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그 선출직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선출직에 출마(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은 개정시 규칙부가 인지하지 못하여 문제가 야기되었음.
3. 규칙부원 공천시 총회법을 잘 아는 부원으로 배정될 필요가 있음
4. 규칙부 자체 임원회에서 제103회 총회가 조기에 파회됨으로 심의기간이 없기에 규칙부는 법대로 업무를 전혀 할 수 없었음. 이 사항을 규칙부 임원회에서 인지하고 지적함. 제103회 총회 규칙부 업무를 전혀 할 수 없었고 규칙개정이 되지 않으므로 규칙개정을 제104회기로 넘기는 사항이 발생 되었음. 앞으로 이러한 규칙부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기타사항

1. 규칙부는 법을 잘 준수하여 심의하였음.

■ **고시부**

지적사항

1.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자들이 고시를 준비하는데 참고로 하는 전문 문제집이 없어 어려움이 있고 매해 출제위원들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 현대적인 전문 문제집이 필요함.

기타사항

1. 고시부가 논문, 설교, 주해 등에서 표절과 양심에 저촉되는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은 잘한 일이며 무기명 2인 채점, 평균점수 산출은 잘한 일임.
2. 고시자들의 변별력과 실력을 위해 4지선다형에서 5지선다형으로 변경한일은 잘한 일임.
3. 군목강도사 고시자들의 사전교육으로 정치과목 교육으로 소양을 갖게 할 것.
4. 외국인으로 총신 등 MDV 졸업자들의 영어, 중국어 등 사용자 강도사고시 실시할 일임.
5. 5지선다형 문제 은행식 시험으로 인한 실력저하 대책 세울 것.

■ **노회록검사부**

지적사항

1. 노회록 규격 시정사항을 노회가 잘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기타사항

1. 노회록 제출은 칭찬할 만큼 양호함.

■ **재판국**

지적사항

1. 재판국의 수입사건 13개, 상설사건 7개의 재판처리는 잘 되었으며 지금처럼 법과 원칙에 의거 진행하길 바람. 특히 관계된 사람들의 압력행사는 철저히 배제하기 바람.
2. 기관지가 아닌 사설언론에 휘둘리지 말 것.

■ **은금부**

지적사항

1. 은퇴목사 1,748명중에 소수인원만 해외수련회를 참석하여 진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지양하고 국내행사로만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 그러므로 많은 회원이 참석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람.

■ **순교자기념사업부**

지적사항

1. 상주서문교회(고 박은규 목사)순직등재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경비지출이 과도하다 사료됨.



- 부장, 사회자를 비롯한 임원 여비와 순서비 2중 지출은 바람직하지 못함
- 2. 프로그램비로 공감콘서트 경비지출 500만원은 과도하게 지출함. 지출을 줄여서 위로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상비부 임원들에게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를 중지 할 것.

■ 사회부

□ 지적사항

1. 사회부 편성예산의 문제점 -총회지원금중 장애인 선교지원(2천만원), 한센인지원(1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관례대로 사회부에서 정관과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보고서와 예산서를 받아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바 재정부에서 장애인선교지원(2천만원), 한센인지원(1천5백만원)이 사회부에서 장애인선교지원요청 및 한센인지원요청이 접수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부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총회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함.
2. 지원받게 되는 기관의 정관과 사업자 등록증, 사업보고서와 예산서를 받을 때 대표자 인감, 소속교회(고단소속) 첨부서류 필요함
3. 광주, 전남 장로회연합회 행사에 지원한 것은 정상적 지원기관이 아니므로 시정하고 지원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필요함.
4. 쿼어축제반대지원을 사회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좋음

■ 교육부

□ 지적사항

1. 회의록은 수기작성한 것을 첨부해야하는데 전부 워드(PC) 작업으로 정리하고 부장, 서기 서명 없으므로 시정할 것.
2. 교육부 임원 중 회계는 장로로 임명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3. 한사랑여행사가 매년 교육부 행사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하나, 모두투어 등 대형여행사의 참여를 확대할 것.
4. 교육부 해외행사시 기독교신문사 기사는 신문사에서 비용을 지출할 것.
5. 금번 회기 임원도 임원배우자 비용을 본인들이 지불하여 참여했고 향후에도 이렇게 처리할 것.
6. 종합공과는 주일학교 학생수준에 맞는 공과를 출판하고 이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현재 연구 조직을 유지시킬 것.
7. 전국주일학교연합회는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는바, 연간계획을 교육부 임원들과 긴밀히 상의 하여 교육의 내실을 강화할 것.
8. 교육부 부장, 부원을 전문가격을 갖춘 자로 해야 함
9. 해외수양회 참가비를 임원본인이 부담할 것.
10. 교육부 해외수양회를 해마다 나갈 것이 아니라 격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도록 할 것.

■ 면려부

□ 지적사항

1. 특이사항이 없음.

■ 학생지도부

□ 지적사항

1. 좋은 부모세우기 세미나 1차-4차 진행 중 440만원을 총회 기획행정국(재무과)의 결재(확인)를 받고 지출하였으며 학생지도부 임원의 결재(확인)를 받지 않은 점은 잘못되었음.
2. 좋은 부모세우기 세미나 중에 현장에서 등록비를 받은 것을 통장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지출한 것은 잘못됨.
1차-300.000만원, 2차-830.000만원, 3차-200.000만원
3. 비전트립 계획을 세웠으나 잘못 세워져(장소) 시행하지 못한 것은 잘못임

■ 신학부

□ 지적사항

1. 총회산하 상비부의 회의는 총회에서 진행하게 되어있음에도 중간지역에서 상비부회의를 진행함은 시정을 요함.
2. 회의록 기록 방법을 정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음. 1차 회의에서 결의하여 2차 회의에서 수정되어야 할 시에는 무엇 때문에 수정되어 임명 취소 또는 재임명 되어야 하는지 등 명시 할 필요가 있음
3. 신학적 연구가 필요시 임명기준을 마련해서 위촉하는 것이 필요 개인 또는 사사로운 위촉은 삼가 해야 함.

■ 전도부

□ 지적사항

1. 전도용 동영상 제작은 좀 더 심도있게 차기회기에서 마무리 할 것.
2. 교통비 지출에 따른 회의록 정리를 잘 할 것.

■ 농어촌부

□ 지적사항

1. 농어촌교회지원금을 88개 교회에 배분한 것은 잘 마무리 했음.
2. 농어촌자립세미나를 활성화 시킬 것. 선제적인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 할 것.

■ 군목부

□ 지적사항

1. 진중세례식 예산이 1,500만원 중 600만원은 세례식에 사용되었고 잔액 900만원은 재정부로 항목전용을 요청 하여 총회 재정부의 허락을 받아 지출결의서(8월 9일)에 의거 2군데에 지출함.(잔액이 남은 이유 : 진중세례식 요청 부대가 8군데에서 2군데로 축소 됨) 추후 예산 편성시 진중세례식 1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편성되어야 함.



■ 경목부

□ 지적사항

1. 경목부수련회는 가능한 국내에서 할 것.
2. 계약은 전자입찰방법을 사용할 것.
3. 경목부수련회는 가능한 일선 경찰서 경목위주로 할 것.
4. 경목부와 경목선교회 관계를 잘 정립할 것.

■ 구제부

□ 기타사항

1. 강원도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헌금을 총회계좌로 입금 후 해당 교회 계좌로 전액 후원한 것은 총회 헌금 투명성과 신뢰를 위해 참 잘 하였다고 사료됨.

■ 출판부

□ 지적사항

1. 총회 신앙월력을 발행하여 배포하는바 좀 더 많은 지교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가 필요함. 현재 163노회 3833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아쉬운 점은 미자립교회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개선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총회 신앙월력을 미자립교회에 반값으로 공급할 있는 방안 연구가 사료 됨

제103회 총회 정기 감사 상설·특별 위원회 지적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 지적사항

1. 위원장의 바른 생각과 리더십에 의해 위원들의 무분별한 해외 활동이 자제되었고 경비도 절감되어 어느 총회선거관리위원회와 비교하여도 모범적이라고 할만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등록 이전에 위원들의 해외감시 활동이 빈번하게 필요한지, 해외공명감시단의 활동을 하고 난 이후 육하원칙에 의한 보고서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세부보고는 별도 보고 예정

■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 지적사항

1. 행사광고를 기독교신문의 지역(대전)신문에 광고함
2. 여비 지급 및 행사비 지급은 총회규정에 상관없이 위원회 결의대로 임의로 지출함.
3. LA해외 세미나 건은 행사 요청이나 확인 작업 없이 진행되었기에 전체감사부에 내놓기로 함.
4. 추경예산(500만원)을 받은 것은 예산안에 쓰기로 해야 함

■ 이슬람대책위원회

□ 지적사항

1. 시대적인 중요성을 인식해야하는 위원회로서 본 교단 산하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성도에게 세미나 및 교육이 절실하다고 사료됨
2. 전문위원 선정시 지역, 전문성, 업무 등이 명확하지 않고 대거 40명에 가깝도록 위촉하는 것은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중 GMS의 전문성을 살려서 추진하기 바람.
3. 세미나 아카데미 진행 중 예산 관련하여 강사료를 지불하고 지역별 여비를 또 강사에게 지불하는 것은 이중지출로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장소사용 교회의 관계자에게 많은 제목으로 지출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통일준비위원회

□ 지적사항

1. 통일준비위원회가 조직도 되기 전에 결의 없이 임월들에 의해 돈이 지불된 것(대북지원금)은 잘못임. 후에 통일준비위원회가 추진할 때 재정부 결의 없이 시행된 것 역시 잘못되었으며 이러한 절차 위반이 재연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2. 제103회 통일준비위원회가 활동을 잘하여 통일부에서 대북지원사업체로 승인받은 것은 교단적으로 매우 잘된 일임.
3. 통일준비위원회의 예산을 사용할시 임원들 임의로 집행할게 아니라 위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협의한 후에 시행할 것.

□ 기타사항

1. 제102회 통일준비위원회를 거울삼아 제103회 통일준비위원회는 열심히 잘 하려 함

■ 교단연합교류위원회

□ 지적사항

1. 한기총 등 이단 및 우리 교단과 교류할 수 없는 교단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 지교회와 성도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

□ 지적사항

1. 강단교류진행위원회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잘 되고 있음.

■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 지적사항

1. 위원회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장은 없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
2. 페루 방문시 회의록에 사전에 결의하지 않고 멕시코 방문이 이루어졌는데 결의 없이 함은 잘못된 것임
3. 전문위원은 장기적으로 언어적 신학적 전문가로 발굴 육성하여야 하는 것임
4. 규정 6조 임무와 12조 지원사항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위원 중에 GMS관계자가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며 해외교단에 방문하여 단순한 인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교류와 협력을 극대화할 방향을 제시할 것.

인사하러 이동하는 것에 막대한 경비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5. 해외 교단 방문자는 방문시마다 전원교류와 협력에 근거한 정밀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6. 해외교단 방문시 해당 국, 도시의 GMS선교사를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고 위로한 것은 잘된 것이며 추가로 해당 국가와 도시에 대한 선교보고, 선교동향, 선교전략도 반드시 검토, 발표하고 자료를 축적하여야 함.

■ 총회역사위원회

□ 지적사항

1. <추경청원> 총회역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장 제9조 2항에 기부금 내용이 있으므로 이 규정(기부금)을 적극 활용하여야함.

■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 지적사항

1. 위 위원회는 명칭부터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교단 총회시 무조건 동의 제청으로 결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하고 해마다 단골메뉴로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으로서 신학적, 성경적 입장 정리를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사료됨.
2. 한국교회 여성 안수로 인하여 장·단점을 파악하여 현장에 도입해야 할 문제를 위원회에서 연장청원하고 지위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일회성 결의는 주의가 필요함.
3. 위원회의 수고는 인정하나 헌법적인 문제를 총회결의 요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를 들면 1) 노회추천해 총신에 입학하도록 요청, 2) 강도사고시를 치르도록 요청하는 것.

■ 장학재단설립위원회

□ 지적사항

1. 총회임원회에서 장학재단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 5인을 선정(최종천, 임병재, 맹연환(이상 목사), 심완구, 이재수(이상장로)하였으나 소집자 최종천 목사가 일정이 바쁜 관계로 소집할 수 없고 또한 감당 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외 위원들은 일정상 3-4개월 미루다가 모두 다 “할 수 없다”고 함으로 지금까지 소집 및 조직을 할 수 없어 존폐위기임을 직시하오니 본회에서 ‘장학재단 설립위원회’를 폐지해야 함

■ 칼빈기념사업위원회

□ 지적사항

1. 4종의 책을 출판국에서 발간함에 있어 총회에서 제작 지원국과 총대에게 무상 배부함을 제외하고 정확한 판매금액과 이익금 등을 산정하여 차익에 대한 부문처리가 명확해야 됨

□ 기타사항

1. 지난 5년에 걸쳐 칼빈기념사업위원회가 많은 활동과 4종의 책을 발간하고 종료예배로 마감함에 격려함.

■ 교정선교위원회

□ 지적사항

1. 교정선교의 사역자도 파악하지 못함(데이터 없음). 따라서 교정위원 중심으로 지원하는 폐단을 가지고 있는바, 교단내 교정 사역자 파악을 우선으로 해야 함.
2. 교정선교위원회가 1회성으로 교정위원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바, 정책도 연계성도 방향성도 없이 연출로 지출되어온 바, 운영세칙을 세워서 진행해야 함.
3. 교단 교정선교회 재정 열악성이 타교단(통합측)의 1/3정도 인 바 재정확충에 대하여 대안을 강구해야함.

□ 기타사항

1. 교정선교에도 70세 넘는 사역자의 지원은 중단하고 자비량선교에 처리는 재정운용 효율성에 장려할만한 일임.

■ 총회회관건축위원회

□ 지적사항

1. 회의록에 위원장, 서기, 서명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2. 지난 위원회가 건축위원의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그 청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임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총회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총회규칙 특별위원회 3항에 어긋나니 바로 잡도록 할 것.

□ 기타사항

1. 총회회관 부지 및 건축문제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온 우리총회 역사적인 큰 사업인데 수차례 시행착오로 이제까지 진행되어 오다가 금회기에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중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우리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회관건립을 위한 주춧돌을 잘 놓아 주시고 수고하신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림.

■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

□ 지적사항

1. 명칭의 문제점 : 교회실사처리위원회는 맞지 않음. 결의전권의 위임은 오해 및 남용 소지가 있다고 결의했으므로 21당회 총족 실사위원회라 함이 정당함.
2. 짧은 시간 적은 인적자원 위원회가 155개 노회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25당회미만으로 제한하여 실시한 결과가 미흡함이 현실임.
3. 실사 후 후속처리 대안을 제시해야함이 필요함. 21당회 헌법적 총족이 안되는 경우 지역에 해당되는 노회를 합병토록 총회서 지도가 절실함.



4. 노회를 분립하려할 때 앞으로는 신중히 하여야 함.

■ 예산심의위원회

□ 지적사항

1. 예산심의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서 폐지하고 총회 회계와 부회계에게 위임하여 심의토록 하여 회의비 절감 및 예산 편성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며 예산을 절감함과 공정성을 위해 예산심의위원회의 폐지를 요청함

■ 총회교육진흥위원회

□ 지적사항

1. 진흥위원회 법인설립요청은 불가하다고 사료 됨. 이유는 1) 진흥위원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해야 할 일을 보면 교육, 출판, 연구 등이며 2) 설립 후 과정은 직원모집, 원장선정, 연구원모집, 월급문제, 사무실문제 등이며 3) 현 교육출판부와의 관계는 재정문제, 독립성문제, 법인감동의 문제, 직원선정문제 등임.
2. 감사 중 4년 전 구조조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폐지하였는데 교육위원회 이름이 있기에 확인해보니 구조조정 후 총회결의를 받아 다시금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어 확인한 결과 현재도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기에 회기는 지났지만 교육위원회도 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세례교인헌금연구위원회

□ 지적사항

1. 연구위원회는 폐지하고 재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 지적사항

1.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는 시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나 이슬람대책, 동성애반대대책, 사회부의 역할 등이 중복되는바 상설로의 연장청원보다 사회부에 맡겨 철저한 대책수집이 필요함
2. 대사회대책과 교회 성도들과 자라는 후세대 신앙사상을 위하여 동영상, 유튜브, 인쇄물, SNS문자 등으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됨.

■ 재개발특별위원회

□ 지적사항

1. 빠른 시간 안에 재개발대책 메뉴얼 및 사례집을 준비하여 배부할 것.
2.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사료됨
3. 총회회의의 전문적 연구와 협조가 적극적 이어야함.
4. 상설위원회 신설 연장 청원보다는 사회부에 이관하여 사회문제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

□ 기타사항

1.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지방조례 대처활동: 국회 및 지자체에서 공동대처안 법안에서 국회 6개 법안에서 5개는 철회되고, 1개로 여가위에 계류 중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총회교회생태 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존속 필요한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함.
2.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교회지원과 대처’ 는 계속해서 총회 홈페이지와 문자전송, 각지노회를 통해서 전체가 인지 할 때까지 홍보 및 안내가 지속되어야 함.
3. 상설위원회 신설 연장 청원보다는 사회부에 이관하여 사회문제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총회인준신학교출신자 총회신학원 입학청원 특별위원회

□ 지적사항

1. 총회결의사항 및 수입사항 및 회의록을 감사해보니 회의 결과 및 결의사항이 지극히 단순하고 전면 일률적이어서 과연 특별위원회의 존재 당위성에 회의감을 피할수 없으며 차라리 총회임원회나 해당 업무가 중첩되는 상비부를 특정하여 통합시키면 좋을 듯 함

□ 기타사항

1. 이 안건을 임원회에 맡긴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목회대학원 운영 및 조사처리위원회

□ 지적사항

1. 보편적으로 문제가 없음.(조사가 잘 진행되었음)
2. 총회결의대로 총회목회대학원 운영에 대해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답변을 듣고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기에 보고서의 내용대로 총회가 받아서 실시하면 총회목회대학원이 정상화 될 것으로 사료됨.
3. 총회목회대학원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학사행정실무자에게 맡겨 학사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총회목회대학원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4. 회의록, 장부기록, 통장관리는 잘 하고 있음.
5. 최종적으로 판단해 볼 때 총회목회대학원운영 및 조사처리위원회 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시행요청 사항들은 그대로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됨.

■ 특별재판국

□ 기타사항

1. 원고가 소 취하한 사건으로 특별재판국이 기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음.

■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 지적사항

1.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헌의 제안노회에 의견청취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므로 방향성에 총



회임원 중심의 행사가 된 점.

2. 3.1운동의 역사적문제와 방향적 대안에 대하여 최소한 타교단(통합)처럼 적어도 3년 정도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 진행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과 진행을 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임원회잔치로 끝냄은 시정해야 함.
3. 남은 잔액은 총회 회계부로 이관 처리해야 함 (854,200원)

■ 총회군선교사회

□ 지적사항

1. 군선교사회 지원금(2,000만원)에 대한 회의록, 영수증이 잘 정리되어있음.
2. 군목부 산하 군선교사회는 재정필요시 군목부에 청원하여 군목부 결의로 지원을 받아 사용토록 해야 함.
3. 총회군선교사회는 군목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하여서는 안됨

■ 학원선교위원회

□ 지적사항

1. 행사(엄마 상담원 교육세미나)
 - ① 특별위원회 허락없이 직원이 내부결재로 임의지출 함.
 - ② 전체 감사부에 보고 후 처리하기로 함.(이유 1. 구두설명하기로 함. 2. 임의지출 금액 440만원, 3. 학원선교위원회 폐지)

■ 이만교회운동본부위원회

□ 지적사항

1. 회의시 인원착오가 발생하여 부당한 여비수령의 건은 경위서를 제출하여 확인 되었으며 앞으로 정확하게 수령되도록 하기로 함.

■ 총회군선교회

□ 지적사항

1. 총회군선교회에서 신평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개 입찰 후 하림건축이 8백만원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림건축 고문 김일겸 장로가 총회군선회 회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하림건축 대표의 도장을 대리 날인하여 입찰 금액을 이억구천만원으로 수정하여 공사 수주를 하게 한 것은 절차와 법을 무시한 행위임.
따라서 총회군선교회는 아주 투명하고 정직하게 재정을 집행해야 함
2. 최근 회의록은 기록되어 있으나 군선교회 회의록 자체가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진행한 군선교회 실무자 사무총장, 서기가 전결로 진행하고있는데 원칙대로 사업을 진행 할 것.
3. 군선교사 퇴직적립금이 적립은 하고 있으나 현재 잔액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퇴직금을 국민연금으로 적립하는 본인 확인 제시요함.
4. 전회계(김영구 장로)통장(농협, 국민은행) 즉시 해지할 것.
5. 현회계(이희중 장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것, 근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보선할 것.

6. 연무대군인교회 건축헌금 전액(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제시할 것.
7. 신흥교회(군인교회) 건축의 건은 하청받은 (주)하람 업체가 건설을 하지 않고 무자격자 선양(김울우)에서 건축을 하여 도의적으로 우리 총회 군선교회가 지양하는 공사가 되지 않고 업자들간에 편리주의 공사가 진행됨.
8. 건축대금 지불관계도 원청받은 (주)하람 주식회사에 지불되어야 하나 선양(김울우)에게 송금되었음.
9. 총회군선교회운영 및 모든 면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아 실무자 사무총장, 서기, 자술서 받기로 하다.



제103회 총회 정기 감사 산하속회 지적사항

■ 전국남전도회연합회

□ 지적사항

1. 수입, 지출 결의서에 회장, 총무, 회계 결재가 되어있지 않음.
2. 회의록에 회장, 회록서기 결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
3. 강사로 총회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되었고 전액 은행 계좌 이체가 정상인데 누락된 것이 있음.
4. 간사 퇴직기금 5회분(500만원씩) 적립을 하여야 하나 본인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현재까지 적립이 되지 않았음(5년동안)
5.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에 의거 임원회의 및 실무임원회의에서 결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담당자가 사업시행을 하니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음.
6. 수입, 지출결의서 잔액이 차이가 있음.
7. 임원회의 및 증경회장 부비 지출은 총회규정대로 은행계좌 이체 할 것.
8. 행사때 상품판매하는 업자들에게 장소 사용료를 청구하여 받아온 전례를 차기회기부터 이러한 행위를 할때는 엄중처벌 할 것임.
9. 해외 선교 및 교회 건축과 국내 선교 건축을 균형에 맞게 시행하고 해외 선교 건축 가공 및 헌당예배시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있으나 여행경비를 절약하여 현지에 송금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경비 절감 금액을 전도사업에 쓰는 방법을 요청함.

■ 전국여전도회연합회

□ 지적사항

1. 선교사 지원계좌는 GMS계좌로 통일하도록 요함.(총회전까지 GMS계좌로 변경하고 그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 기타사항

1. 전국여전도회연합회는 총회 지원없이 회원들에게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격려함.
2. 전국150여개 노회중 85개 노회가 협력하고 있으나 아직 연합활동을 하지 않은 노회 여전도회의 참여를 구함.
3. 총무전도사님 정년은 무보수로 봉사하고 후임을 준비 중.

■ 기독교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

□ 지적사항

1. 총회지원금과 자체회비로 운영하고 있는 면려회는 행사, 집회, CE대회로 로컬활동지원으로 1년 행사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편성과 집행에 정확한 자료를 남겨두도록 해야 함.
2. 재정집행 시에 결의의서, 지출서명 등이 전무하므로 추후 시정을 지도함.
3. 교육부장이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 후 경비지출은 시정지도 함.
4. 로컬지원비도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로컬에 따라 10만, 20만, 30만, 50만

각각 다른 것은 시정이 필요 함.

■ 전국주일학교연합회

□ 지적사항

1. 지적사항 없음.



제103회 총회 정기 감사 산하 기관 지적사항

■ 유지재단

□ 지적사항

1. 현재 임대 사무실이 없으므로 임대 공실이 없도록 할 것
2. 현재 일반 임대를 관리비로 건물유지 보수 및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수익률이 더 이상 하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직영비율 70%)
3.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유리보수 철저)
4. 임대현황
 - ① 외부(12) 1개는 기독교신문 노회9개 총회관련 8개(총 29개)
 - ② 임대료 보증금을 (노회)차등금액을 획일화 하도록 해야할 것
5. 매년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

■ 은금재단

□ 지적사항

1. 정관개정 요구건
제 6조 임원의 선임에서 ①,④을 임원은 총회 소속 연금가입자로 한다고 개정함이 마땅함.
2.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사건이 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으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함.
3. LEE&LEE 세무회계 컨설팅의 보고서와 같이 납골당 관련 채권은 별도계정으로 관리함. 재판이 끝나면 처리하고, 새로운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 노력하도록 할 것.
4. 목사안수자의 연금 의무가입 실사가 작년 30%정도인데 각 노회에서 의무가입을 적극 권장해 주도록 총회에서 결의 해 주시길 바람.

■ 사회복지재단

□ 지적사항

1. 정기예금을 금융기관, 상위기관으로 할 것.(예: 하이투자금융->)KB증권, 국민은행으로 하였으면 함.)
2. 교육세미나에 전문강사(구청 과장)를 강사로 모셔서 실행할 것.
3. 재정부가 총회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함.
4. 직원을 속히 보충할 것.

■ 기독교신문 총무국/편집국

□ 지적사항

1. 지적사항 없음.

제103회 총회 정기 감사 총신신학원 운영이사회 지적사항

■ 운영이사회

□ 지적사항

1. 법률 자문비는 줄이는 방법이 필요함.
2. 제103회기 이사회비가 다른회기(100~102회기)보다절반이 줄어든 이유는 잘해결해야함.(참고 100회기 136명 중 66명 완납. 15명 분납. 101회기 136명 중 71명 완납 20명 분납, 102회기 144명중 74명 완납 19명 분납)

□ 기타사항

1. 수입, 지출 내역은 이상없음
2. 임원회의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어 재감사를 실시함.
임원회의비를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이 분류 됨
 - ① 운영이사회 전체회의 1회
 - ② 임원회의(이사장, 서기) 5회
 - ③ 법정소송대응비 6회
 - ④ 임원회의비 18회
 - ⑤ 회비출석조사처리위원 회의비 3회
 - ⑥ 이사회 선거관리위원 회의비 3회로 확인됨
 결과 : 지출을 분류해보니 아주 적절하게 지출됨을 확인함.

제103회 총회 정기 감사 총회세계선교회 지적사항

■ 세계선교회 행정국

□ 지적사항

1. 정관개정
 - 1) 정관개정을 할 경우 전체 이사회 결의 후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체이사회 통과->총회 규칙부->규칙부 심의 후 ->총회 현장서 2/3 통과 후 사용토록 해야 함.
 - 2) 정관에 들어갈 특별위원회를 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없음.(특별위원회를 만들 경우 규칙부를 통해 총회 허락이 있어야 함)
 - 3) 활동비의 건은 정관에 기록이 되어야 하며 방법을 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듯 함.
2. 세칙
 - 1) 여행사를 선정함에 있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함.
 - 2) 수의계약을 피하고 입찰을 하도록 하려면 즉흥적인 행사 진행 계획을 자제하고 최소 3개월 전에 행사계획을 잡아야 함.
 - 3) 여행사 선정을 함에 있어서 입찰업체 명단(2-3개) 입찰자 참석대상자(분주)가 세칙에 들어



가야 함.

3. 확인

- 1) 총회가 끝나면 총회결의를 파악하여 각국, 각 부서에 꼭 인용.
- 4. 이외의 것은 보편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음.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시정촉구(2회)
- 5. 선거관리규정 제2장제4절“정년전 전이사항”에 대해서는 “직전이사장 1인”으로 수정 요함
- 6. 정관 제3장 7절5항 전문위원을 GMS이사 임원들을 전원제외하고 선임하라“로 수정요함<임원회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바를 전문위원에 들어가 설명하고 진행하면 창의적인 전문위원 활동이 위촉됨.
- 7. 이사회와 혼행정을 이원화 할 것 운영규칙 제1장3절5항 본부 조직표에 이사회는 후원회로 기능이 충실하도록 할 것.
- 8. 정관 제2장제6절1항 명예이사장이 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 하므로 자문 요청시 참석으로 수정 할 것.

■ 세계선교회 훈련국

□ 지적사항

년간 계획한 선교사 훈련은 무리없이 잘하고 있다고 사료 됨.

- 1. 그러나 LMTC, 연합수련회 , 계획과 예산에 있음에도 실행하지 못했음.
(이유: 시간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못함)
- 2. 선교후보생 발굴 어려우 실정을 감안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
- 3. 연간 훈련계획서 및 세부 시행세칙 예산 등등을 ‘수검표’전면에 배치하여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

□ 기타사항

- 1.GMS선교센타 훈련국 2019년1월, 3월, 9월 기간동안 선교훈련 계획세운 것이 원활하게 추진 잘하였음.
- 2.GMS 향후 중장기적으로 해외현지에서도 훈련국 설립 통하여 현지인 목회자와 캄보디아, 러시아, 몽골, 태국,베트남 선교사가 시간과 경비부담이 적을 것으로 사료 됨
- 3. 제2의 GMS선교훈련센타 (베트남지역정도면 좋을 것으로 사료 됨, 이런 지역 대상으로<년간,전,후반기> 선교훈련을 통해서도 더욱 발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됨
이유 : 거리상 문제, 비용경비문제, 타문화권 훈련 등
교육 : 선교사 훈련, 계속훈련, 재교육 훈련 등

■ 세계선교회 선교국

□ 지적사항

- 1. 작년회기 세계선교대회 이후 1억여원을 처리함에 필요한 의결이 요구되며 선교사 지역위원회 송금이후 지원금 처리내용(지역선교부에서 사용한 내용, 영수증 처리)이 꼭 보고되어야 함.
- 2. 선교현지에 한인목회자 선교사를 정확히 전수조사후 선교자격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 3. 정관,운영규칙,본부운영세칙을 너무 자주 수정하는 것은 선교운영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으

므로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4. 1년 경상예산서 수입부분에 51300 회비수입부분에 513이 이사회 수입이 저조한 것은 적극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51362 선교사회비 부분은 명칭을 선교사 행정 분담금으로 수정함이 가함.
5. 위원회 운영을 원칙과 규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위원회 정족수를 채워야 함. 2인의 결의는 부당함. 멤버케어 위원회는 어떤 규칙을 따라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회의를 하고 회의비가 지출되는 것은 심히 잘못됨.
6. 미주지역 OMTC이사구성을 GMS산하로 구성하고 OMTC훈련받아 선교사로 임명받은 선교사들에게 단기간이 끝난 후 장기전환 기회를 주어 정식 멤버십을 갖추도록 해야 함.
7. 감사 수검시 연간 선교, 사역에 관한 계획서 및 세부시행세칙, 예산 등을 '수검표' 전면배치하여 수검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 함.

■ 세계선교회 재정복지국

□ 지적사항

1. 노회 파송이사 대비 미납부의 건(노회 146명 중 완납 14%, 부분납부 15%, 합 29%, 미납자 56%) 총회차원의 개선책이 필요함
2. 예산 초과 집행의 건
 - ① 훈련생 현장실습비 11,538,095원
 - ② 선교대회 28,868,690원
 - ③ 본부MK수련회 916,600원
 - ④ G.H 전세보증금 188,335,300원
3. 선교사업비 지출 중 적격증빙이 갖추지 못한 것.
4. OMTC해의 단기 선교훈련원 지원의 건은 예산에 없는 항목인데 임원회(제정위원회)결의로 진행 하였는바 GMS규정에 없는 사항으로 규정 위반함.
5. 경조사비 지급 규정에 맞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음.
6. 직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 부담금에 있어 적립비율이 50%밖에 미치지 못하고 공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 조정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함

■ 세계선교회 사회복지재단(요양원)

□ 지적사항

1. 정관 부칙에 정관 제정일과 개정일이 명기되어 몇차 개정일임을 확인 하여야 하는데 명기되지 않은 것은 시정되어야 함.
2. 개정 신청된 정관은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 이후 시행가능하기에 허가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함.

□ 기타사항

1. 지난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잘 시정됨
 - 업무매뉴얼 제작
 - 대출 7000만원에 대한 상환계획을 세움



제103회 총회 정기 감사 총신대학교 감사 사항

■ 총신대학교

□ 보고사항

1. 총신 100만기도후원회 장학금 지급 관련 의혹 내역에 대한 조사와 불법 정관변경에 대한 건과 총신법인국에 대한 정관 변경 및 법인직원의 관선이사 불법 채용 의혹과 그간의 총신 사태에 따른 총회지원금 내역 감사 등을 위해 정기 감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관선이사들의 거부로 정기감사가 시행되지 못함(※ 세부보고는 별도 보고 예정)

제103회 총회 정기 감사 교회자립개발원 지적사항

■ 교회자립개발원

□ 지적사항

1. 각 노회에서 교세통계를 정확하게 보고해 줄 것.
2. 농어촌자녀장학사업보가 실제적인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화 할 것.
3. 도시교회, 농어촌교회 자립문제를 각각 매뉴얼화 할 것.
4.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게 할 것.
5. 이사들의 이사비를 상향 조정 할 것.

□ 지적사항

1. 각 노회에서 교직자 수련회중 강사파송은 긍정적임.

제103회 총회 정기 감사 총회목회대학원 지적사항

■ 총회목회대학원

□ 지적사항

1. 목회대학원 운영자금이 전무상태인데 목회대학원을 운영하는데 학교 및 총회자원의 지원이 필요함. 운영을 위한 학생 모집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목회대학원 계획을 수립하여 목회자 질적 향상을 요함.

제103회 총회 정기 감사 총회 임원회 지적사항

■ 총회 임원회

□ 지적사항

1. 제19차 임원회

- 3번 : 대구노회에서 요청했을 지라도 권징조례 144-146조 치리회간의 소원건에 대한 판결없이 천서위원회로 이첩이 불가능하다.
- 4번 : 중부노회는 제103회 총회에서 재판국 판결이 채용이되었고 시별된자들을 “양측”이라고 판단하여 증명서류발급 요청의 건은 보류토록 한 것은 불가능하다.
- 5번 : 서경노회 총회결의사항은 절차에 맞게 발급된 것이 아니므로 취소하고 절차에 맞게 청원하여 서류를 총회결의대로 발급해야한다.

제20차 임원회

- 3번 : 중부노회 소위원회 경과보고 중 “양측”이라는 표현은 제103회 총회 판결문 채택채택에 위반이되므로 삭제해야한다.

제22차 임원회

- 1번 : 충남노회가 사고노회가 아니므로 노회가 요청한 32개 교회, 노회파송 임시당회장, 대표자증명발급 요청을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발급해야 한다.
 - 18번 : 이능규씨 재심신청서는 제104회 총회 안건 구성요건이 안되므로 현의부 이첩이 아니라 각하해야 마땅하다.(이유 : 노회면직자)
2. 총회 임원회가 총회에서 수임받지 않은 건을 다룸과, 서기가 업무규정대로 수행하지 아니함은 재고되어야 하며, 제103회 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많이 줄여서 운용함은 매우 잘 하였다고 판단됨.

■ 총회 임원 서기단

□ 지적사항

- 1. 특별한 사항이 없음

■ 제103회 총회준비위원회

□ 감사평

- 1. 총회준비위원회(100, 101회기)는 긴급동의안으로 현장에서 결의된바 있으며, 102회기 총회준비위원회는 정식 현의를 통해서 결의가 되었으나 103회기 총회준비위원회는 102회기 현의안에 연속성을 가지고 결의로 진행하게 되었음.
- 2. 총회준비위원회의 예산을 재정부에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용이 되었으며 또한 추경을 받아 사용까지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총회준비위원회는 1) 총회결의를 통해 조직되어야 함. 2) 총회준비위원회는 총회준비만을 위해 진행되어야 함. 3) 특별위원회 구성은 5인을 넘지 않아야 하며 특별한 경우는 절차에 따라 초과 할 수도 있다.



■ 성석교회 화해조정 총회 임원 소위원회

□ 지적사항

1. 화해의사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해산하였기에 여기까지 마무리하였음.

■ 구조조정 후속처리 총회 임원 소위원회

□ 지적사항

1. 제103회 총회 결의사항
 - 1) 구조조정에 의해 시행토록 결의된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 맡기도록 함.
 - 2) 임원회 결의(제4차 18년 10월 4일) : 예산부담임의집행, 직원급여 조정은 서기, 회록서기, 회계 3인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함.
2. 총회연금 임의 지원금은 10%를 (총액 대비) 환수하여 직원 선교비로 관리하며, 사용시 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하기로 하는 것은 임원회가 아닌 재정부에 보내 관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지도함.
3. 재입사자 명예퇴직금이 지급된 것이 환급됨. 임금증)
4. 재입사자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정관에 삽입하기로 지도함.
5. 직원인사에 있어서 상별규정을 확인하여 인사에 반영토록 지도하여 적용토록함.
6. 직원 연차 사용 일부 개선은 잘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함.
7. 총무임금제도 개선에 있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개선토록 한 위원회의 결의는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제안사항

1. 한승남 씨의 명퇴시 호봉이 당시에 윤석훈 씨와 동일했는데 재입사시 (퇴사~입사 2년) 2년 이 지난 후 인데도 불구하고 주임 4호봉으로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은 불가함. 당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윤석훈, 서효재, 강수진, 유장현을 2호봉씩을 올려주든지 한승남을 2호봉을 내려야 형평성에 맞다고 봄. 그럴 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형평성에 맞다고 봄.

■ 중부노회 관련 총회 임원 소위원회

□ 지적사항

1. 노회분립청원은 노회서 분립청원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임원회) 분립을 추진하는 것은 법논리에 맞지 않으므로 소위원회의 결의는 삭제되어야 함.
2. 총회가 인정한 노회에 공문이 발송되었으나 총회가 인정치 않은쪽의 질의도 취소공문을 보낸 것은 취소공문을 취소하고 담당자들을 확인하여 시별해야 할 것임.
3. 총회가 인정한 노회서 총회에 행정건을 올린 것을 듯 총회개이스에 등재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임.(※등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등재해야 하며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야함.)

■ 부서기 관련 총회 임원회 소위원회

□ 감사결과

1. 총회임원회는 『제103회기 부서기 후보 정창수 목사 불법 당선 무효 이의제기』건과 『전남노회 제103회 총회 총대 선거 불법 및 총회결의 및 지시위반 선관위지시위반, 노회 선거법 위반 선거위 심의분과 위원회에 금품제공, 으로 인한 부서기 박탈 요청의 건』에 대한 총회 임원소위원회 조직을 통한 확인 결과 당시 부서기 후보자 정창수 목사의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가 완료됨(제25차 총회임원회(2019.9.4))



제103회 총회 정기 감사 특별감사 및 조사처리 보고

■ 제102회기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한 제103회 총회결의에 따른 특별 감사

□ 결과 보고

1. 재정 관련 회의록 작성하여야 하며 입출금에 대한 총회통장으로 하되 결의 및 정관 제 16 조 등에 근거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올바르게 시행하지 않았음. 또한 총회가 지정하는 통장을 통한 재정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2. 정관과 그 취지나 목적에 상관없는 여행 등 소모성이나 일회성 사업에 치중되었음

■ 제36회기, 제37회기 전국남전도연합회에 대한 제103회 총회결의에 따른 특별감사

□ 결과 보고

1. 재정입출금 내역서, 통장, 품의서, 회계장부, 회의록 등이 전반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불명확 하였음.
2. 36회기에 부당하게 추경된 예산 일천이백만원을 환수조치 함
3. 37회기에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 이천만원을 해당 관계자로부터 환수 조치하였으며 스스로 총회 및 연합회, 노회 및 당회에서 2년 동안 근신하기로 확인함

■ 제102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 위원들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조사 처리(부서기 후보 관련)

□ 조사 결과

1. 수사권이 없는 총회 감사부의 입장에서는 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해 확인된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술서 등에 근거하여서만 사실 확인이 가능했음
2. 당시 부서기 후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금품제공 관련자 000에 대한 관계를 직답식으로 물으니 전혀 없으며 또한 금품 수수에 대한 사실이 없음을 본인의 진술로 확인함
3. 당시 심의분과위원들은 50만원의 봉투를 간식비라는 명목으로 당시 노회관계자에게 전달 받았으나 바로 되돌려 줬음을 당사자들과 노회 관계자들의 진술과 자술서 등을 통해 확인 함
4. 수차례 관련자들의 진술 및 자술서 등을 통해 확인된 공통적 사실은 당시 부서기 후보자에게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함

■ 새소망교회(서인천노회) 김OO 부목사 그루밍 사건의 조사처리의 건

□ 결과 보고

1. 2018년 11월 6일 총회장의 지시를 받고 신속하게 조사를 시행함
2. 감사부 실무관계자들을 노회로 파송하여 서인천노회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도하여 바르게 처리하도록 조치함
3. 서인천노회는 김OO 목사를 면직하였고 이후에 새소망교회는 서인천노회를 탈퇴함

■ 성석교회 관련 임원회 이첩 건(강OO씨 조사 처벌의 건 과 성석교회 불법서류(대표자증명서,

소속증명서) 발급에 대한 조사처리)에 대한 보고의 건

□ 결과 보고

1. 강OO 목사는 이전부터 서경노회 성석교회에 2017년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으며, 제101회기 헌의부 서기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으며 성석교회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으로 성석교회에 관여해 왔음을 확인함
2. 임OO목사와 강OO 목사는 제103회 총회 현장에서 평소 동문의 임OO 목사를 대신하여 아무런 연관도 없는 서경노회 성석교회의 불법서류(대표자증명서, 소속증명서) 신청에 관여하여 증명서를 불법으로 발급 받을수 있도록 총회 직원에게 총회장의 지시를 빌미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불법서류를 발급하도록 협조한 부분은 인정됨
3. 서경노회 성석교회의 불법서류에 대해서는 감사부의 빠른 조치로 총회장에게 보고 후에 임원회를 통한 취소 공문이 발급되었으며 총회장은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감사부에 이와 관련된 사실 확인을 지시함. 이에 총회 감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강OO목사의 처벌 건은 당시 발급된 서류는 취소되었고 이후로는 이와 관련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기에 당사자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 함

■ 제99회기 ~ 103회기까지 총회부서(교육부, 학생지도부, 농어촌부, 경목부, 군목부, 은급부 등) 해외행사 관련 임원들의 경비지출에 관한 특별감사

□ 결과 보고

1. 임원들이 해외 행사를 실시하는 각 부서에 회전문식으로 특정 부서에 배정되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해외경비 일체를 부담하지 않고 각 교회 또는 협찬이나 광고를 통해 그 경비를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사자들에게 확인 후 엄중 경고 조치함
2. 향후 본인(임원) 해외경비를 반드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함

■ 전남제일노회-서광주노회(잔류측) 합병처리위원장 금품수수 및 제103회 총회결의 불이행 조사처리의 건

□ 조사결과 보고

1. 제103회기 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처리되어야 함
2. 합병위원들이 제103회 총회현장에서 보고서를 낼 때 각 노회소속 교회 명단이 누락되었음. 위원들의 이러한 과오로 말미암아 총회와 해당노회 및 교회들에 대한 행정처리에 있어 어려움과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 위원들은 총회 헌법과 규정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함
3. 이러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남제일노회와 서광주노회가 정식 노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총회가 적극 지도하여야 함
4. 당시 합병위원장과 위원들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해당자에 대한 천서 보류 요청을 천서검사위원회로 보내어 시행 조치토록 함

■ 한성노회 노회장 전OO 목사에 대한 총신운영이사회비 횡령 의혹에 관한 조사처리의 건

□ 결과 보고



1. 운영이사회 회계장부를 통해 횡령의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천서 제한 보류 조치를 천서검사위원회로 요청함

■ 대구노회 박해근 목사의 대구노회의 권징조례 제138, 141조 관련 위법사항 조사 요청의 건

□ 결과 보고

1. 대구노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의해 총회 채용시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사실을 확인하였음. 이에 대구노회가 총회 채용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재판국을 설치한 것은 권징조례 138조, 141조를 위반함
2. 당사자간에 합의 조정을 이룰수 있도록 권면함

■ 독도교회관련 조사의 건

□ 결과 보고

1. 독도교회는 총회유지재단에 가입시켜야 함
2. 경동노회는 엄수봉 목사를 치리해야 함

■ GMS 세계선교대회 재정추가분지출 제고의 건

□ 결과 보고

1. 관계자 7인을 불러 조사하기로 함
 - ① 일시 : 2019년 9월 16일(월) 오전 11시
 - ② 장소 : GMS 월문리센터
 - ③ 대상 : 김찬곤 목사, 현상민 목사, 하재삼 목사, 이상복 목사, 김정훈 목사, 조기산 목사(이상 6명)
 - ④ 감사인 : 최병철 장로, 태준호 장로, 박춘근 목사
- 참고인 : 조승호 목사

▣ 제103회기 감사부장을 마치면서 소회..

총회를 둘러싼 잡음은 끊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그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잡하게 얽힌 난제들을 완전하게 풀어 해치지는 못하였지만 부족하나마 여기 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랴만 적어도 평범함을 떠나 교계 지도자로 나선 경우라면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또한 지금의 우리의 시선으로는 어렵없는 세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하고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산도 없이, 죽어서는 묘비명조차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개혁자로 평생을 청빈하게 살다 간 존 칼빈(John Calvin)의 기도로 제103회기 감사에 대한 소회를 정리하고자 한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이 되게 하시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